

(7) 승강기(엘리베이터)

빈도(%)

| | | | | | |
|-----|----------|----------------|--------------|------------------------------|----------------------------------|
| | 승강기가 있는가 | 승강기는 전총을 운행하는가 | 장애인용승강기가 있는가 | 장애인용승강기는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가 | 장애인용승강기 전면에는 1.4x1.4m의 유효공간이 있는가 |
| 예 | 3(37.5) | 3(100.0) | 3(37.5) | 2(100.0) | 2(100.0) |
| 아니오 | 0 | 0 | 5(62.5) | 0 | 0 |

| | | | | | |
|-----|---------------------------|--|---------------------------------|--------------------------------|------------------------------|
| | 장애인용승강기와 승강장 사이는 3cm 이하인가 | 장애인용승강기의 내부 유효면적은 폭 1.1, 깊이 1.35m 이상인가 | 장애인용승강기의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인가 | 장애인용승강기의 버튼의 높이는 0.8-1.2m 사이인가 | 장애인용승강기의 버튼, 통화장치에 점자표지가 있는가 |
| 예 | 2(100.0) | 2(100.0) | 3(100.0) | 1(33.3) | 1(33.3) |
| 아니오 | 0 | 0 | 0 | 2(66.7) | 2(66.7) |

(8) 화장실

빈도(%)

| | | | | |
|-----|----------------|--------------------------------|--------------------------------|--------------|
| | 각 층마다 화장실이 있는가 | 대변기칸의 출입문 유효폭이 0.7m 이상인 곳이 있는가 | 화장실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가 있는가 | 장애인용화장실이 있는가 |
| 예 | 4(57.1) | 0 | 7(87.5) | 0 |
| 아니오 | 3(42.9) | 8(100.0) | 1(12.5) | 7(100.0) |

| | | | | | |
|-----|--------------------------|---------------------------|-------------------------|-------------------|----------------------------------|
| | 장애인화장실은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있는가 | 장애인용변기와 세면대는 출입문 가까이에 있는가 | 장애인용화장실의 바닥면에 높이차이는 없는가 | 화장실의 바닥은 미끄럼지 않은가 | 화장실의 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재질이 다른 바닥재가 있는가 |
| 예 | 3(75.0) | 1(33.3) | 7(87.5) | 3(37.5) | 0 |
| 아니오 | 1(25.0) | 2(66.7) | 1(12.5) | 5(62.5) | 8(100.0) |

| | | | | | |
|-----|-----------------------------------|-------------------------|-------------------------------------|----------------------------------|--|
| | 장애인용화장실의 출입문이 여닫이문일 경우 바깥쪽으로 열리는가 | 장애인용화장실의 대변기출입문이 점이식문인가 | 화장실출입문 옆 벽면에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점자표지가 있는가 | 세면대의 수도꼭지 형태는 레버식, 누름버튼식, 광감지식인가 | 장애인용 대변기 칸 막이의 바닥 유효면적은 폭 1m 이상, 깊이 1.8m이상인가 |
| 예 | 7(87.5) | 0 | 0 | 8(100.0) | 0 |
| 아니오 | 1(12.5) | 8(100.0) | 8(100.0) | 0 | 7(100.0) |

| | | | | |
|-----|-------------------------------------|---------------------------------|-----------------------------------|--------------------------------|
| | 장애인용 대변기 좌우측에 유효폭 0.75m 이상의 공간이 있는가 | 장애인용화장실의 주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인가 | 장애인용 대변기 출입문이 여닫이식일 경우 바깥쪽으로 열리는가 | 장애인용화장실의 대변기는 좌수평 및 수직손잡이가 있는가 |
| 예 | 1(14.3) | 2(40.0) | 3(50.0) | 2(50.0) |
| 아니오 | 6(85.7) | 3(60.0) | 3(50.0) | 2(50.0) |

| | | | | |
|-----|-------------------------|---------------------|---------------------|---------------------------------------|
| | 수평손잡이 높이는 0.6-0.7m 사이인가 | 수직손잡이 길이는 0.9m 이상인가 | 수직손잡이 높이는 0.6m 내외인가 | 세정장치, 휴지걸이를 시각적으로 알아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
| 예 | 1(25.0) | 0 | 0 | 5(71.4) |
| 아니오 | 3(75.0) | 3(100.0) | 5(100.0) | 2(28.6) |

| | | | | |
|-----|-------------------------|------------------------------|-----------------------------|--|
| | 소변기 양옆에 수평, 수직 손잡이가 있는가 | 소변기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0.8-0.9m 사이인가 | 소변기 수직손잡이 높이는 1.1-1.2m 사이인가 | 세면대 상단 높이는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인가 |
| 예 | 0 | 0 | 1(25.0) | 0 |
| 아니오 | 5(100.0) | 4(100.0) | 3(75.0) | 7(100.0) |

(9) 강의실

빈도(%)

| | | | | |
|-----|------------------------------|-----------------|-------------------------|------------------------|
| | 강의실에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랜선용 좌석이 있는가 | 휠체어 사용자 좌석이 있는가 | 계단형 강의실에서 휠체어의 이동이 가능한가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0.8m 이상인가 |
| 예 | 2(50.0) | 0 | 0 | 2(50.0) |
| 아니오 | 2(50.0) | 4(100.0) | 3(100.0) | 2(50.0) |

| | | |
|-----|-------------------------|----------------------------|
| |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1.2m 이상인가 | 출입문의 손잡이 높이는 0.8-0.9m 사이인가 |
| 예 | 0 | 3(75.0) |
| 아니오 | 3(100.0) | 1(25.0) |

| | | | |
|-----|-------------------------|---------------------------------|---------------------------------|
| | 벽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있는가 | 벽면의 방이름, 번호 표기 3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가 | 출입구 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재질이 다른 바닥재가 있는가 |
| 예 | 0 | 2(40.0) | 0 |
| 아니오 | 5(100.0) | 3(60.0) | 5(100.0) |

(10) 도서관

| | 열람실 및 도서 정보에 대한 안내 표지가 있는가 | 인터넷으로 도서 검색이 가능한가 | 음성지원 도서검색이 가능한가 | 도서검색에 대한 대인서비스가 가능한가 |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출연장이 가능한가 | 빈도(%) |
|-----|----------------------------|-------------------|-----------------|----------------------|----------------------|-------|
| 예 | 1(100.0) | 1(100.0) | 1(100.0) | 1(100.0) | 0 | |
| 아니오 | 0 | 0 | 0 | 0 | 1(100.0) | |

| | 장애인을 위한 대리 대출이 가능한가 | 장애인 열람석이 있는가 | 서가의 간격이 0.9m 이상인가 | 서가의 입구 유효폭이 0.9m 이상인가 | 서가의 경우 회전식 개찰구여서 들어갈 수 없는가 | 빈도(%) |
|-----|---------------------|--------------|-------------------|-----------------------|----------------------------|-------|
| 예 | 0 | 0 | 0 | 0 | 0 | |
| 아니오 | 1(100.0) | 1(100.0) | 1(100.0) | 1(100.0) | 1(100.0) | |

| | 장애인을 위한 열람실이 있는가 | 열람석이 출입구와 열람석 상단의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는가 | 열람석 하부에는 높이 0.7-0.9m 높이는 0.7-0.9m 사이인가 | 열람석 하부에는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이 있는가 | 접수대 전면에 1.4×1.4m 의 활동공간이 있는가 | 빈도(%) |
|-----|------------------|---|--|--|------------------------------|-------|
| 예 | 0 | 0 | 1(100.0) | 1(100.0) | 1(100.0) | |
| 아니오 | 1(100.0) | 1(100.0) | 0 | 0 | 0 | |

| | 접수대 상단의 높이는 0.7-0.9m 사이인가 | 접수대 하부에는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이 있는가 | 약시용 독서확대기가 있는가 | 음성지원 컴퓨터가 있는가 | 점자프린터가 있는가 | 빈도(%) |
|-----|---------------------------|--|----------------|---------------|------------|-------|
| 예 | 1(100.0) | 0 | 1(12.5) | 1(12.5) | 1(12.5) | |
| 아니오 | 0 | 1(100.0) | 7(87.5) | 7(87.5) | 7(87.5) | |

(11) 식당

| | 셀프서비스 인가 | 휠체어 사용자 좌석이 있는가 | 출입문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인가 | 출입문 전면 유효거리는 1.2m 이상인가 | 도어체크의 문닫하는 시간이 3초 이상인가 | 빈도(%) |
|-----|----------|-----------------|----------------------|------------------------|------------------------|-------|
| 예 | 1(100.0) | 0 | 0 | 1(100.0) | 1(100.0) | |
| 아니오 | 0 | 1(100.0) | 1(100.0) | 0 | 0 | |

| | 출입문 손잡이 높이는 0.8-0.9m 사이인가 | 벽면의 방이름, 번호 표기가 3m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가 | 출입구 전면에는 점형블록 또는 재질이 다른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는가 |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는 3cm 이하인가 | 빈도(%) |
|-----|---------------------------|-----------------------------------|---------------------------------------|----------------------|-------|
| 예 | 0 | 1(100.0) | 0 | 1(100.0) | |
| 아니오 | 1(100.0) | 0 | 1(100.0) | 0 | |

| | 높이차이가 3cm 이상일 경우 경사로나 훨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가 | 식판대 전면에 1.4×1.4m의 활동공간이 있는가 | 식판대 상단 높이는 0.7-0.9m 사이인가 | 식판대의 하부에는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이 있는가 |
|-----|---|-----------------------------|--------------------------|---|
| 예 | 1(100.0) | 1(100.0) | 0 | 1(100.0) |
| 아니오 | 0 | 0 | 1(100.0) | 0 |

(12) 시각장애인안내시설

빈도(%)

| | 점자블록 |
|-----|---------|
| 예 | 0 |
| 아니오 | 8(100.) |

(13) 기타시설

빈도(%)

| | 장애인용공중전화가 있는가 |
|-----|---------------|
| 예 | 8(100.0) |
| 아니오 | 0 |

며. 한양대학교

(1) 접근로

빈도(%)

| | 접근로에 계단 차량이 진입할 수 있 는가 | 접근로에 계단 대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가 | 경사로가 없을 경우 우회도로 는가 | 접근로를 차도와 구분할 수 있는 연석 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가 | 접근로가 30m 이상일 경우 30m마다 1.5×1.5m의 참을 설치했는가 |
|-----|------------------------------|-----------------------------|-----------------------|---------------------------------------|--|
| 예 | 14(87.5) | 11(68.8) | 2(50.0) | 6(37.5) | 1(10.0) |
| 아니오 | 2(12.5) | 5(31.3) | 2(50.0) | 8(57.1) | 9(90.0) |

| | 연석 높이는 6-15cm사이인가 | 바닥은 평평하며 미끄럼지 않은가 | 보행장애물이 있는가 | 지상에서 2.1m까지 가로수의 가지치기 를 했는가 | 접근로의 기울기가 18분의 1 이하인가 | 유효폭은 1.2m 이상인가 |
|-----|-------------------|-------------------|------------|-----------------------------|-----------------------|----------------|
| 예 | 0 | 10(66.7) | 2(13.3) | 9(75.0) | 3(23.1) | 10(83.3) |
| 아니오 | 10(100.0) | 5(33.3) | 13(86.7) | 3(25.0) | 10(76.9) | 2(16.7)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빈도(%)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은 2%이상인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찾기 쉬운 곳에 설치했는가 | 비dark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가 그려져 있는가 |
|-----|-----------------|--------------------------|--------------------------------|-------------------------------|
| 예 | 8(61.5) | 7(43.7) | 2(25.0) | 8(100.0) |
| 아니오 | 5(38.5) | 9(56.3) | 6(75.0) | 0 |

| | 안내요원 또는 주차 단속 요원이 있는가 | 주출입구 및 승강 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했는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 및 승강기로 가는 통로의 유효폭은 1.2m이상인가 | 통로의 장애물은 없는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폭은 3.3m이상인가 |
|-----|-----------------------|------------------------------|--|--------------|------------------------|
| 예 | 0 | 5(62.5) | 8(100.0) | 4(50.0) | 3(42.9) |
| 아니오 | 8(100.0) | 3(37.5) | 0 | 4(50.0) | 4(57.1)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길이는 5m 이상인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평행주차의 폭은 2m 이상인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평행주차의 길이는 6m 이상인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에 높이 차이는 없는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의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인가 |
|-----|------------------------|-----------------------------|------------------------------|---------------------------|---------------------------------|
| 예 | 3(42.9) | 2(12.5) | 0 | 8(100.0) | 8(100.0) |
| 아니오 | 4(57.1) | 1(33.3) | 3(100.0) | 0 | 0 |

(3) 주출입구

빈도(%)

| | 높이 차이가 3cm 이하인가 |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했는가 | 주출입구에 점자블록을 설치했는가 | 경사로의 유효폭은 0.9-1.2m인가 | 경사로의 높이가 0.75m마다 수평참이 있는가 |
|-----|-----------------|---------------------------------|-------------------|----------------------|---------------------------|
| 예 | 7(53.8) | 8(100.0) | 0 | 9(64.3) | 0 |
| 아니오 | 6(46.2) | 0 | 13(100.0) | 5(35.7) | 9(100.0) |

| | 경사로의 시작, 끝, 굴절부분에는 1.5×1.5m의 활동공간이 있는가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0이하인가 | 경사로 양쪽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 경사로 손잡이는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 경사로 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30cm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했는가 |
|-----|--|-----------------------|-----------------------|------------------------|---|
| 예 | 8(66.7) | 1(7.7) | 6(42.9) | 6(100.0) | 0 |
| 아니오 | 4(33.3) | 12(92.3) | 8(57.1) | 0 | 8(100.0) |

| | 경사로 손잡이의 높이는 0.8-0.9m 사이인가 | 경사로 손잡이의 지름은 3.2-3.8cm 사이인가 | 경사로 손잡이와 벽과의 간격은 5cm 내외인가 | 경사로 손잡이 양쪽 및 판이 부착되어 있는가 | 경사로 바닥은 미끄럼지 않고 평탄한가 |
|-----|----------------------------|-----------------------------|---------------------------|--------------------------|----------------------|
| 예 | 4(50.0) | 1(12.5) | 3(60.0) | 0 | 12(85.7) |
| 아니오 | 4(50.0) | 7(87.5) | 2(40.0) | 9(100.0) | 2(14.3) |

| | 외부경사로의 경우 우 지붕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 외부경사로의 경우 안전벽이나 안전휀이 설치되어 있는가 | 휠체어리프트는 눈에 잘 띠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 계단 위, 아래에 휠체어리프트를 타기 위한 1.4×1.4m의 승강장이 있는가 | 승강장에 관리자를 호출할 수 있는 벨이 있는가 |
|-----|----------------------------|-------------------------------|-----------------------------|--|---------------------------|
| 예 | 0 | 4(30.8) | 1(33.3) | 1(100.0) | 0 |
| 아니오 | 13(100.0) | 9(69.2) | 2(66.7) | 0 | 1(100.0) |

| | 승강장에 작동설명서가 부착되어 있는가 | 휠체어리프트의 열쇠는 항상 사용이 가능한가 | 휠체어리프트는 경사형인가 수직형인가 |
|-----|----------------------|-------------------------|---------------------|
| 예 | 1(100.0) | 1(100.0) | 경사형1(100.0) |
| 아니오 | 0 | 0 | 0 |

(4) 출입구(문)

빈도(%)

|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인가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 거리는 1.2m이상인가 | 출입구의 바닥면에 높이차이가 있는가 | 회전문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다른 형태의 문이 있는가 | 도어체크의 문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인가 |
|-----|------------------------|----------------------------|---------------------|-------------------------------|-------------------------|
| 예 | 13(86.7) | 12(85.7) | 0 | 2(33.3) | 0 |
| 아니오 | 2(12.5) | 2(14.3) | 15(100.0) | 3(66.7) | 2(100.0) |

| | 출입문 손잡이의 높이는 0.8-0.9m 사이인가 | 출입문 옆 벽면에 방이 름이 점자표지판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 방이름, 방 번호가 3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가 | 주출입구 30cm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재질이 다른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예 | 3(20.0) | 0 | 8(53.3) | 1(6.7) |
| 아니오 | 12(80.0) | 15(100.0) | 7(46.7) | 14(93.3) |

(5) 복도

빈도(%)

| | 복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인가 | 3m 앞에서 사람 얼굴의 식별이 어려운가 | 복도에서 강의실까지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 손잡이의 지름은 3.2-3.8cm 사이인가 | 손잡이의 시작, 끝 부분에 점자표지판이 있는가 |
|-----|--------------------|------------------------|--------------------------|-------------------------|---------------------------|
| 예 | 14(93.3) | 2(13.3) | 0 | 1(100.0) | 0 |
| 아니오 | 1(6.7) | 13(86.7) | 14(100.0) | 0 | 5(100.0) |

| | 손잡이가 연속 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 복도 바닥의 높이차이가 3cm 이상인가 |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 가 있는가 |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가 | 계단, 승강기, 화장실의 전면 30cm앞에는 점형블록 또는 재질이 다른 바닥재가 있는가 |
|-----|---------------------|-----------------------|-----------------------|----------------|--|
| 예 | 0 | 1(6.7) | 0 | 2(14.3) | 0 |
| 아니오 | 2(100.0) | 14(93.3) | 1(100.0) | 12(85.7) | 13(100.0) |

| | 통로 뒷부분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인가 | 유효높이 2.1m 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접근 방지용 보호벽이 있는가 | 복도 내에 강의실 방향, 위치를 알 수 있는 점자블록이 있는가 |
|-----|--------------------------|--|------------------------------------|
| 예 | 13(92.9) | 0 | 0 |
| 아니오 | 1(7.1) | 3(100.0) | 15(100.0) |

(6) 계단

빈도(%)

| | 계단 및 참의 유효 폭은 1.2m 이상인가 | 계단에 챠면이 있는가 | 디딤판의 너비는 28cm 이상인가 | 챙면의 높이는 18cm 이하인가 |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과 챠면의 너비와 높이는 일정한가 |
|-----|-------------------------|-------------|--------------------|-------------------|--------------------------------|
| 예 | 15(100.0) | 14(93.3) | 15(100.0) | 13(86.7) | 11(78.6) |
| 아니오 | 0 | 1(6.7) | 0 | 2(13.3) | 3(21.4) |

| | 챙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과 60도 이상인가 | 계단코는 3cm 이상 돌출되지 않았는가 | 계단의 양쪽에 손잡이는 설치되어 있는가 | 계단의 손잡이는 2중인가 | 손잡이의 형태는 둥근가 |
|-----|-----------------------------|-----------------------|-----------------------|---------------|--------------|
| 예 | 11(78.6) | 14(93.3) | 2(13.3) | 0 | 6(42.9) |
| 아니오 | 3(21.4) | 1(6.7) | 13(86.7) | 14(100.0) | 8(57.1) |

| | 손잡이의 지름은 3.2-3.8cm 사이인가 | 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에 30cm이상의 수평 손잡이가 있는가 | 손잡이의 양끝부분,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이 있는가 | 계단의 시작과 끝에 점형불록이나 재질이 다른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예 | 0 | 2(15.4) | 0 | 1(7.1) |
| 아니오 | 8(100.0) | 11(84.6) | 14(100.0) | 13(92.9) |

(7) 승강기(엘리베이터)

빈도(%)

| | 승강기가 있는가 | 승강기는 전총을 운행하는가 | 장애인용승강기가 있는가 |
|-----|----------|----------------|--------------|
| 예 | 9(56.2) | 9(100.0) | 4(25.0) |
| 아니오 | 7(43.8) | 0 | 12(75.0) |

(8) 화장실

빈도(%)

| | 각 층마다 화장실이 있는가 | 대변기칸의 출입문 유효폭이 0.7m 이상인 곳이 있는가 | 화장실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가 있는가 | 장애인용화장실이 있는가 |
|-----|----------------|--------------------------------|--------------------------------|--------------|
| 예 | 14(93.3) | 4(30.8) | 11(73.3) | 1(7.7) |
| 아니오 | 1(6.7) | 9(69.2) | 4(26.7) | 12(92.3) |

| | | | | | |
|-----|--------------------------|-----------------------------|-------------------------|-------------------|-----------------------------------|
| | 장애인화장실은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있는가 | 장애인용변기와 세 면대는 출입문 가 까이에 있는가 | 장애인용화장실의 바닥면에 높이차이는 없는가 | 화장실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가 | 화장실의 전면에 점형 블록 또는 재질이 다른 바닥재가 있는가 |
| 예 | 11(100.0) | 11(100.0) | 9(81.8) | 10(90.9) | 0 |
| 아니오 | 0 | 0 | 2(18.2) | 1(9.1) | 11(100.0) |

| | | | | | |
|-----|---------------------------------------|-------------------------|--------------------------------------|----------------------------------|---|
| | 장애인용화장실의 출입문이 여닫이문일 경우 비aghan쪽으로 열리는가 | 장애인용화장실의 대변기출입문이 접이식문인가 | 화장실출입문 옆 벽면에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점자 표지가 있는가 | 세면대의 수도꼭지 형태는 레버식, 누름버튼식, 광감지식인가 | 장애인용 대변기 칸막이의 바닥 유효면적은 폭 1m 이상, 깊이 1.8m이상인가 |
| 예 | 3(37.5) | 7(63.6) | 0 | 11(100.0) | 1(11.1) |
| 아니오 | 5(62.5) | 4(36.4) | 11(100.0) | 0 | 8(88.9) |

| | | | | | |
|-----|-------------------------------------|----------------------------------|-----------------------------------|---------------------|-------------------------|
| | 장애인용 대변기 좌우측에 유효폭 0.75m 이상의 공간이 있는가 | 장애인용화장실의 주 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인가 | 장애인용 대변기 출입문이 여닫이식일 경우 바깥쪽으로 열리는가 | 장애인용화장실의 대변기는 좌변기인가 | 대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가 있는가 |
| 예 | 1(9.1) | 7(63.6) | 3(60.0) | 11(100.0) | 11(100.0) |
| 아니오 | 10(90.9) | 4(36.4) | 2(40.0) | 0 | 0 |

| | | | | | |
|-----|-------------------------|---------------------|---------------------|---------------------------------|---------------------------------|
| | 수평손잡이 높이는 0.6-0.7m 사이인가 | 수직손잡이 길이는 0.9m 이상인가 | 수직손잡이 높이는 0.6m 내외인가 |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 대변기에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가 | 화장실의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
| 예 | 10(90.9) | 0 | 3(27.3) | 10(90.9) | 0 |
| 아니오 | 1(9.1) | 10(100.0) | 8(72.7) | 1(9.1) | 11(100.0) |

| | | | | | |
|-----|-------------------------|------------------------------|-----------------------------|--|-----------------------------|
| | 소변기 양옆에 수평, 수직 손잡이가 있는가 | 소변기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0.8-0.9m 사이인가 | 소변기 수직손잡이 높이는 1.1-1.2m 사이인가 | 세면대 상단 높이는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인가 | 세면대 밑에 무릎이나 발판이 들어갈 공간이 있는가 |
| 예 | 10(90.9) | 5(50.0) | 5(55.6) | 4(36.4) | 9(81.8) |
| 아니오 | 1(9.1) | 5(50.0) | 4(44.4) | 7(63.6) | 2(18.2) |

(9) 강의실

빈도(%)

| | | | | |
|-----|------------------------------|-----------------|--------------------------|-----------------------|
| | 강의실에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랜선용 좌석이 있는가 | 휠체어 사용자 좌석이 있는가 | 계단형 강의실에서 활체 어의 이동이 가능한가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0.8m이상인가 |
| 예 | 0 | 0 | 0 | 10(90.9) |
| 아니오 | 11(100.0) | 11(100.0) | 1(100.0) | 1(9.1) |

| | | | | |
|-----|-------------------------|------------------------|----------------------------|--------------------|
| | 출입문의 전면 유효 거리가 1.2m이상인가 | 도어체크의 문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인가 | 출입문의 손잡이 높이는 0.8-0.9m 사이인가 | 출입문의 손잡이 형태는 레버식인가 |
| 예 | 11(100.0) | 2(67.0) | 2(18.2) | 0 |
| 아니오 | 0 | 1(33.0) | 9(81.8) | 11(100.0) |

| | | | | |
|-----|-------------------------|---------------------------------|---------------------------------|--------------------------|
| | 벽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있는가 | 벽면의 방이름, 번호 표기 3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가 | 출입구 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재질이 다른 바닥재가 있는가 |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가 3cm 이하인가 |
| 예 | 0 | 8(72.7) | 0 | 9(81.8) |
| 아니오 | 11(100.0) | 3(27.3) | 11(100.0) | 2(18.2) |

(10) 도서관

빈도(%)

| | | | |
|-----|----------------|----------------|------------|
| | 약시용 독서확대기가 있는가 | 음성 지원 컴퓨터가 있는가 | 점자프린터가 있는가 |
| 예 | 0 | 0 | 0 |
| 아니오 | 16(100.0) | 16(100.0) | 16(100.0) |

(11) 시각장애인안내시설

빈도(%)

| | | |
|-----|-----------|-----------|
| | 점자블록 | 점자안내지도 |
| 예 | 0 | 0 |
| 아니오 | 16(100.0) | 16(100.0) |

(12)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빈도(%)

| | |
|-----|-----------|
| | 경보 및 피난설비 |
| 예 | 4(28.6) |
| 아니오 | 10(71.4) |

무장애대학교 만들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의 개선

- I.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다시 보기
- II. 장애인 교육권의 법률적 근거와 문제점
- III. 해외 사례 : 미국 버클리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 환경
- IV. 국내 사례 :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 류명숙
- V. 참고문헌
- VI. 설문지 1 : 장애인차별도 인식조사 설문지
- VII. 설문지 2 : 각 대학별 교육환경 실태조사지

I.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다시 보기⁴²⁾

1. 제도의 실재

(1) 입학대상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입학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⁴³⁾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장애인들 중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로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장애(뇌성마비 포함)등의 장애를 지닌 자들 중 어느 한 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1994년 11월에 발표된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세부시행 계획에 따라 특수 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대학 이상 각급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2항, 별표의 진단, 평가, 심사 및 선정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대상자는 주로 장애 등급 1급 또는 2급의 중증 장애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실시 여부와 입학 가능한 대상자의 선정 여부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 유형은 대상자의 구분보다는 각 학교의 입학대상자에 따라 학교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기를 희망했던 지원자들의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표 II - 3>과 같이 '95학년도에 301명이 지원하여 98.7%인 297명, '96학년도에 447명이 지원하여 98.2%인 439명, '97학년도에 530명이 지원하여 99.1%인 525명, '98학년도에 567명이 지원하여 99.8%인 566명이 적격판정을 받아 총 1,827명이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또한 '98학년도에는 소수이기는 하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와 같은 장애를 지닌 지원자 이외에 정신지체나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도 지원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처럼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선발방법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는 특차모집과 정시모집 그리고 수시 모집으로 나누

42) 이 글은 「장애인 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2000, 김헬레나 부분 발췌 요약했음을 미리 밝힌다

43)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어 실시된다. 특차모집은 일반학생들 전형보다 먼저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할 입학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2000학년도에는 공주대, 고려대, 단국대, 대구대, 상명대, 숭실대, 연세대, 우석대, 원광대, 이화여대, 한남대, 한양대, 삼척대, 청운대 등 29개 대학들이 특차모집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정시모집은 일반학생들과 동시에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입학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2000학년도에 정시모집의 방법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한 대학으로는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서울신학대, 장로회신학대, 한림대, 남서울대, 동명정보대 등 7개 대학들이 있다.

수시 모집은 '97학년도에 처음 실시된 선발방법으로 대학입학전형 모집기간 동안 날짜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나 심사를 거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로 2000학년도 대학모집 요강에 따르면 충북대, 건국대 등 2개 대학이 수시 모집 방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표 II - 3>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심의결과(단위 : 명)

| 학년도 | 구 분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체부자유 | 정신지체 | 언어장애 | 계 | 비 율(%) |
|------|-----------|------|------|-------|------|------|-------|--------|
| 1995 | 지 원 자 | 55 | 73 | 173 | - | - | 301 | 100.0 |
| | 적 격 판 정 자 | 54 | 73 | 170 | - | - | 297 | 98.7 |
| | 부적격판정자 | 1 | - | 3 | - | - | 4 | 1.3 |
| 1996 | 지 원 자 | 87 | 106 | 254 | - | - | 447 | 100.0 |
| | 적 격 판 정 자 | 86 | 102 | 251 | - | - | 439 | 98.2 |
| | 부적격판정자 | 1 | 4 | 3 | - | - | 8 | 1.8 |
| 1997 | 지 원 자 | 82 | 102 | 346 | - | - | 530 | 100.0 |
| | 적 격 판 정 자 | 82 | 100 | 343 | - | - | 525 | 99.1 |
| | 부적격판정자 | 0 | 2 | 3 | - | - | 5 | 0.9 |
| 1998 | 지 원 자 | 73 | 141 | 349 | 3 | 1 | 567 | 100.0 |
| | 적 격 판 정 자 | 72 | 141 | 349 | 3 | 1 | 566 | 99.8 |
| | 부적격판정자 | 1 | - | - | - | - | 1 | 0.2 |
| 합계 | 지 원 자 | 297 | 422 | 1,122 | 3 | 1 | 1,845 | 100.0 |
| | 적 격 판 정 자 | 294 | 416 | 1,113 | 3 | 1 | 1,827 | 99.0 |
| | 부적격판정자 | 3 | 6 | 9 | - | - | 18 | 1.0 |

*자료출처 : 교육부(1999b),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표 II - 4> 2000학년도 대학별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모집방법

| | 특차모집 | 정시모집 | 수시모집 |
|------|---|---------------------------------|-------------|
| 대학교 | 공주대, 제주대, 창원대, 고려대, 단국대, 대구대, 대불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숭실대, 신라대, 연세대, 용인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한남대, 한양대, 나사렛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서울신학대, 장로회신학대, 한림대 | 충북대, 건국대 |
| 국립산업 | 삼척대 | | |
| 대 | | 청운대, 호원대 | 남서울대, 동명정보대 |
| 사립산업 | | | |
| 대 | 29개교 | 7개교 | 2개교 |
| 계 | | | |

* 자료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9), 200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각 대학의 대입전형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2000학년도에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했던 대학들 중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는 수능성적 상위 10%~2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였으며, 창원대, 강남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등은 학생부 40%,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60% 또는 학생부 40%, 대학수학능력시험 50%, 면접 10%와 같은 반영비율로 장애학생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제주대, 충북대, 나사렛대, 대불대 등과 같은 대학들은 수학능력시험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부와 면접만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였으며 대구대, 동국대, 우석대, 원광대, 중앙대 등과 같은 대학들은 수학능력시험만을 전형기준에 반영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나타난 전형반영비율의 특징으로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학능력시험의 반영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입학 절차

장애인들이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려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대학입학이 가능한 특수교육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판정 신청을 한 후, 출신학교장이 원서를 작성해주면 시·도 교육감의 확인을 거쳐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장)가 원서를 접수·심의하게 된다.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시기는 매년 9~10월경으로 이 때 신청자는 특수교육 대상자 심

사원서(출신학교 및 시·도교육청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및 장애인 수첩 사본 또는 장애인 등록증명서, 진단서(종합병원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진단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자가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적격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심의하여 결정하게 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장애학생에게 통지함으로써 입학대상자의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 적격한 입학대상자로 판명된 지원자는 희망대학에 지원하게 되고, 각 대학에서는 그들의 입학여부를 결정하게 된다⁴⁴⁾.

이처럼 1998년 이전에 장애인들이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려면 특수교육심사위원회에서 먼저 장애 판정을 받아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입학 대상자라는 확정을 받은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8년도부터는 시·도 교육감과 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고등학교장이 작성한 원서를 장애인 수첩 사본 등과 함께 학교장 또는 총·학장에게 제출하면 해당대학 총장이 입학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처럼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어진 이유로는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입학 대상자들이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가 많고, 선정절차도 8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복잡한 점이 많았으며, 선정기회를 놓칠 경우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교육부, 1999b), 결국 이러한 선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장애학생들은 신청시 번거로움을 덜 수 있었으며 대학은 자격 선정권과 입학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4) 연도별·대학별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현황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의 연도별 입학현황은 <표 II - 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일반대학교 및 산업대학교의 경우 '95학년도에는 6개 대학이 실시하여 107명, '96학년도에는 16개 대학이 실시하여 201명, '97학년도에는 30개 대학이 실시하여 234명, '98학년도에는 39개 대학이 실시하여 298명, '99학년도에는 40개 대학이 실시하여 349명으로, 총 1,189명이 입학하였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95학년도에는 2개 대학이 실시하여 6명, '96학년도에는 2개 대학이 실시하여 16명, '97학년도에는 6개 대학이 실시하여 42명, '98학년도에는 6개 대학이 실시하여 57명, '99학년도에는 6개 대학이 실시하여 47명으로, 총 168명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학년도의 경우 총 입학정원인 1,010명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장애인 중 33.7%에 해당하는 254명이 38개의 대학에 입학하였다(장애인복지 21, 2000년 3월 20일)⁴⁵⁾.

<표 II - 5>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학년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계 |
|------|-------|------|------|------|------|------|-------|
| 대학 | 실시대학수 | 6 | 16 | 30 | 39 | 40 | 131 |
| | 입학학생수 | 107 | 201 | 234 | 298 | 349 | 1,189 |
| 전문대학 | 실시대학수 | 2 | 2 | 6 | 6 | 6 | 22 |
| | 입학학생수 | 6 | 16 | 42 | 57 | 47 | 168 |
| 계 | 실시대학수 | 8 | 18 | 36 | 45 | 46 | 153 |
| | 입학학생수 | 113 | 217 | 276 | 355 | 396 | 1,357 |

* 자료출처 : 교육부(1999b),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대학과 전문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 수임.

각 대학별 모집 정원과 입학자 수는 <표 II - 6>과 <표 II - 7>에 각각 나타나 있는데, 우선 각 대학별 모집 정원을 살펴보면(<표 II - 6> 참조), 2000학년도에는 총 38개교에서 1,010명의 장애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표 II - 6> 2000학년도 대학별 특수교육 대상자 모집정원

(단위 : 명)

| 대 학 명 | 선발인원 | 대 학 명 | 선발인원 | 대 학 명 | 선발인원 |
|-------------|------|-------------|------|-------------|-------|
| 공 주 대 | 6 | 대 구 대 | 174 | 연 세 대 | 20 |
| 제 주 대 | 80 | 대 불 대 | 10 | 용 인 대 | 2 |
| 창 원 대 | 21 | 동 국 대 | 10 | 우 석 대 | 10 |
| 충 북 대 | 35 | 명 지 대 | 41 | 원 광 대 | 28 |
| 감 리 교 신 학 대 | 4 | 상 명 대 | 11 | 이 화 여 대 | 10 |
| 강 남 대 | 43 | 서 강 대 | 34 | 장 로 회 신 학 대 | 5 |
| 건 국 대 | 25 | 서 울 신 학 대 | 6 | 전 주 대 | 30 |
| 고 려 대 | 56 | 숙 명 여 대 | 10 | 조 선 대 | 20 |
| 나 사 렷 대 | 10 | 승 실 대 | 22 | 중 부 대 | 35 |
| 한 남 대 | 10 | 한 립 대 | 8 | 한 양 대 | 20 |
| 삼 척 대 | 18 | 남 서 울 산 업 대 | 24 | 동 명 정 보 대 | 27 |
| 청 운 대 | 33 | 호 원 대 | 20 | 중 앙 대 | 10 |
| 단 국 대 | 30 | 신 라 대 | 48 | | |
| 합 계 | | | | | 1,010 |

* 자료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9), 200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44) 단, 검정고시 출신자는 시·도 교육감에게 직접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45) 2000학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전문대학에 입학한 장애인의 숫자는 아직 밝혀진 자료가

없어 본 논문의 내용에 실지 못하였다.

<표 II - 6>에서 나타난 각 대학의 모집정원을 통해 실제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의 수를 살펴보면, 매해 가장 많은 장애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대구대학교가 2000학년도에도 83명으로 가장 많은 장애학생을 선발하였으며, 신라대 16명, 고려대, 나사렛대 각 14명, 단국대, 건국대 각 10명 등 총 254명의 장애인이 선발되었다. <표 II - 7>의 입학현황은 앞의 <표 II - 6>의 모집정원의 수치에 훨씬 밀도는 수치로 몇몇 대학들은 모집 정원만을 고시한 채 아예 특수교육 대상자를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지원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이 학교가 요구하는 자격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모집 정원만을 규 정해 놓은 채 소극적인 선발정책을 펴 실제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원하는 장애학생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 - 7> 2000학년도 대학별 특수교육대상자 입학현황

(단위 : 명)

| 대학명 | 입학인원 | 대학명 | 입학인원 | 대학명 | 입학인원 |
|----------|----------|-----------|------|----------|---------|
| 공제창총 | 주주원북 | 대학 | 5 | 대학 | 83 |
| 감리교신학 | 교대 | 구불동명상서울숙명 | 3 | 연용우원이장로회 | 세인석화여신학 |
| 강건고나한삼청단 | 남국려사남척운국 | 대학 | 2 | 대학 | 5 |
| | 대학 | 대학 | 7 | 대학 | 9 |
| | 대학 | 대학 | 3 | 대학 | 3 |
| | 대학 | 대학 | · | 대학 | · |
| | 대학 | 대학 | 10 | 대학 | 4 |
| | 대학 | 대학 | 14 | 대학 | 6 |
| | 대학 | 대학 | 14 | 대학 | 2 |
| | 대학 | 대학 | 1 | 대학 | · |
| | 대학 | 대학 | 6 | 대학 | · |
| | 대학 | 대학 | 5 | 대학 | · |
| 합계 | | 대학 | 10 | 대학 | 16 |
| | | | | 254 | |

* 자료출처 : 장애복지21, 2000년 3월 20일자.

※ 사료출처 : 경제학자22, 2000년 9월 호.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99학년도 665명, 2000학년도 753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제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 수는 지난해 349명, 올해 254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제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 수가 지난해 보다 감소한 이유로는 각 대학이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모집 정원을 줄인 데다 수능 성적의 반영 비율은 더욱 높아진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

들의 대학진학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통한 고등교육기관의 문호 확대의 기회는 점차 확대되어져야 할 것이다.

5)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문제점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 제도 역시 근본적인 교육환경의 개선은 뒷전으로 한 채 법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대학교육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긴 제도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전시행정적인 발상에서 나온 정책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박옥순, 1994). 이러한 평가 속에서 5년여간 지속되어온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교육부의 지원과 관리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교육부는 처음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시행을 발표할 당시 약속했었던 관리시설 확충 및 대학에 대한 시설용자금 지원 방안 등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교육문제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게 떠넘긴 채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편의시설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대학들의 입학거부를 정당화·합법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시행이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장애인 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장애학생이 장애를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을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과연 강제성을 띠지 않고 단지 권장사항일 뿐인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대부분의 국·공립 대학들이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대를 비롯하여 이러한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국·공립대학들 대부분(공주대, 제주대, 창원대, 충북대 제외)은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과연 가능할 일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넷째,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의 입학자격 요건에 대한 규제 및 중증 장애인의 입학 거부 사례를 들 수 있다. 교육부가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실시 여부를 각 대학의 권장사항으로 공고하면서 대학은 각자 자의적으로 만든 전형모집 요강을 통해 장애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대부분 전형모집 요강에서는 대상자를 '경증장애인 또는 다른 사람의 별다른 도움 없이 학업수행과 학교생활이 가능한 학생'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증장애인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상당히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I - 8>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제도 실시대학의 설립별 구분

| 설립별 | 대 학 명 |
|------|--|
| 국·공립 | 공주대, 제주대, 창원대, 충북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건국대, 고려대, 나사렛대, 단국대, 대구대, 대불 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신학대, 숙명여대, 숭실대, 신라 대, 연세대, 용인대, 우석대, 원광대, 이화여대, 장로회신학대, 전주대, 조 선대, 중부대, 중앙대, 한남대, 한림대, 한양대 |
| 사립 | 삼척대 |
| 국립산업 | 사립산업 |
| | 남서울대, 동명정보대, 청운대, 호원대 |

* 자료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9). 2000학년도 대학진학정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9)가 발표한 2000학년도 대학입학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D대학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입학 가능한 학생을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지체부자유자(뇌성마비 포함)중 장애 3등급 이상인 자로서 특수시설을 요하지 않는 자(특수교육진흥법개정에 따라 본 대학교에서 심사하여 선정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J대학의 경우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뇌성마비 포함)/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중복장애는 제외/본교는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교육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신중히 지원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심의기구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규정과 '신체장애로 다른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줄 경우 대학이 휴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을 내세워 장애인의 대학입학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세계일보, 2000년 3월 9일).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지원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조정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전면담제도'는 선발과정에서 중증의 장애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한 방안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 다(장애인한가족협회, 1997). 게다가 법개정을 통해 '97학년도부터는 그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의 장애인 접근시설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비와 같은 교육여건의 부재를 이유로 들어 중증 장애인의 대학입학을 교묘하게 거부하고 있다. 비와 같이 전형모집 요강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전형모집을 통해 합격한 학생을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면접의 과정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차별금지 등)⁴⁶⁾를 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46)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 (차별의 금지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7.12.13> ②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시행일 98.6.14]

II. 장애인 교육권의 법률적인 근거와 문제점

1996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인문학부에 입학한 시각 장애인 허세봉(19)군이 입학 후 한 달 여만에 휴학을 하고 결국 자퇴로 이어진 사건은 장애인 특별전형의 문제점과 대학 내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하여 전사회적인 여론을 만들어 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세대에는 사상 최초로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주장하는 장애인 대학생들의 차치 자조 조직인 '게르니카'를 결성, 대동제 기간에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였다.⁴⁷⁾

이후에 게르니카는 이 서명운동을 연세대 한 학교로 머물지 않고 일부 사학이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를 확대하면서 기형적인 분리교육 형태로 폐쇄적인 양적 팽창만을 피하자,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서명운동으로 확대하였다.

이 시점에 이르러 장애인 대학생들의 교육권 문제는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그 담론을 형성해 가기 시작하고 2000학년도에 와서 일부 대학에서 과거와 다름없이 장애인 거부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방향으로의 해결을 모색한다.

그것은 이른바 법적 소송에 의거한 법적 권리 확인과 확보라는 미국식 시민권 획득이라는 제도권적 투쟁과 흑인 민권운동의 경향이 그러하듯 장애인 대학생 문제의 제도화 즉 법률화를 시도하는 지향성이 주요한 한 축을 이룬다. 그렇게 입학 거부에 따른 단순 구제라는 형태로 법률 투쟁이 되어오다 2001년 3월 숭실대 재학생인 장애여성 박지주씨가 교육 환경 부재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권리 구현의 운동성을 갖춘다.

이에 간략하게나마 법률 검토를 통한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권과 관련한 여러 짧은 쪽글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후에 앞서 나아가 단순히 학내 교육환경에만 머무르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인 이동권, 접근권과 함께 연이은 법률 투쟁이 되었으면 한다.⁴⁸⁾

제23조 (벌칙)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1.1]

47) 한겨레신문, 1996.5.11 신문기사 참조

48) 이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무장애대학교 만들기 간담회 -그 첫 번째 이야기-」 중에서 장애인 대학생운동 약사 부분을 참조하라. 「무장애대학교 만들기 간담회-그 첫 번째 이야기」, 2001.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I) 장애인복지법과 편의증진법을 중심으로

배용호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면연대 연구실장

장애인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지닌다. 그리고 그렇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장애인 역시 인간답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주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완전하게 참여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을 받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장애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의 권리)⁴⁹⁾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도 사회의 모든 활동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애인은 사회의 모든 활동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완전한 참여란 부분적인 참여, 주변적 참여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장애인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사회활동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활동에, 나의 선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로 인해서 장애인의 활동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장애로 인해서 장애인도 자신의 사회 활동 참여의 종류와 활동 참여의 받았을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결국 그 “다른 사람”이 없을 경우 장애인은 건축시설이나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원하는 때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비장애인은 모두 앞문으로 들어가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뒷문으로 들어간다면 동등하게 이용한다고 할 수 없다. 비장애인은 모두 품위 있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업히거나 들려서 올라가고 불편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동등하게 이용한다고 할 수 없다. 비장애인은 모두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위험을 감수하며 이용해야 한다면 동등하게 이용한다고 할 수 없다. 접근권은 이러한 모든 것은 차별로 규정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 역시 완전한 이용이나 접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49) 第4條(障礙人の権利) ①障礙人は 인간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②障碍人は 國家·社會의 구성원으로서 政治·經濟·社會·文化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장애인이 모든 건축물, 모든 교통시설, 모든 교통수단, 모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애인이 완전하게 사회의 모든 분야에 참여하고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하지만, 건축물, 교통시설, 교통수단, 정보의 교환 및 접근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 교통시설, 교통수단, 정보에의 접근은 장애인이 완전하고 평등하게 사회의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접근권이다.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호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장애인복지법 제3조 기본이념)⁵⁰⁾

장애인의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참여는 곧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장애인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차별에는 직접적인 차별과 간접적인 차별이 있다. 직접적인 차별이 장애인이므로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간접적인 차별은 장애인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배려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평등하고 완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중대한 차별인 것이다.

접근권은 장애인이 건축물, 교통시설, 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정보에의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접근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차별은 두 가지이다. 첫째,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건축시설이나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결국 그 “다른 사람”이 없을 경우 장애인은 건축시설이나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원하는 때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비장애인은 모두 앞문으로 들어가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뒷문으로 들어간다면 동등하게 이용한다고 할 수 없다. 비장애인은 모두 품위 있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업히거나 들려서 올라가고 불편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동등하게 이용한다고 할 수 없다. 비장애인은 모두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위험을 감수하며 이용해야 한다면 동등하게 이용한다고 할 수 없다. 접근권은 이러한 모든 것은 차별로 규정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 역시 완전한 이용이나 접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은 차별해서는 안된다.

50) 第3條(基本理念) 障碍人福祉의 基本理念은 障碍人の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社會統合을 이루는데 있다.

다(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⁵¹⁾

법적 근거 :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건물, 교통수단, 교통시설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편의증진법 제4조 접근권)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법적인 제도의 정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닌다. 장애인 복지의 증진은 곧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대접받으며,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책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히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장애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함께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회 모든 영역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마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와 같은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명백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다.

법적 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닌다(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⁵²⁾

51) 第8條(差別禁止 등) ① 누구든지 障碍를 이유로 政治·經濟·社會·文化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障碍를 이유로 政治·經濟·社會·文化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障碍人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障碍人을 비하·모욕하거나 障碍人을 이용하여 부당한 營利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障碍人의 障碍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2) 第9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의 발생을 예방하고, 障碍의 조기발견에 대한 國民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障碍人의 福祉를 증진할 責任을 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14조 법제상의 조치 등)⁵³⁾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편의증진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하지만 이와 같은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 당국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장애인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의 증진에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사회참여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모든 국민은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애인이 완전하고 평등하게 교육의 전과정에 참여하며, 학교 내에서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법적 근거 :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증진법에 협력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10조 국민의 책임)⁵⁴⁾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과 편의증진법에 나타난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교육권과 연관하여)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법과 편의증진법 가운데서 교육과 관련된 조항들을 아래에 정리하여 보았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女性障碍人の 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福祉施策을 障碍人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國民이 障碍人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3) 第14條(法制상의 措置 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制상 및 財政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4) 第10條(國民의 責任) 모든 國民은 障碍發生의 예방, 障碍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障碍人の 인격을 존중하고 社會統合의 理念에 기초하여 障碍人福祉增進에 협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5조(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①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책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적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서 장애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뉴스,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기타 교육, 집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겨우우에는 수화통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 및 민간행사주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자 및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편의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6조(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점업체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위한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지원 거부 또는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한 조치 등을 취한 자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등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교통수단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9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 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1.21>

제13조 (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①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지역안내책자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수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제23조 (시정명령등) ①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벌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99. 1·21>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감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 ②③④⑤

제28조 (이행강제금) ①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장애인 특별전형에 대한 법 검토와 대안

김형수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면연대 연구원

1. 법률 분석과 대안

장애인을 정의한 장애인 복지법과 특수교육 대상자를 정의한 특수교육진흥법과의 법 연관성과 공유성이 미약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한 장애인의 법적 지위를 위의 법에서는 그대로 집행할 수 없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법적 지위도 위의 법에서는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기 세칙에서 장애인 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과의 공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대학의 자율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헌법 소원을 통해 법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구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본 제도는 교육부의 권장사항으로 대학장이 임의로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다른 특별전형과는 달리 모집 정원에 제한이 없어 이 제도는 사학 재단의 재정 확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당하다.

이에 연세대는 96년도 학칙을 살펴보면 정원 외 특별 대상자에 대해 일일이 세칙을 마련하였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세칙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은 학내에서 아무런 법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서처럼 학교가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였을 경우 편의시설 지원금 같은 지원제도를 국가가 마련하고 장애 학생 지원센터처럼 학교 의무조항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이것은 구 교육법상에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학생 선발에 대한 학교의 권리는 명기되어 있으나 그 선발한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칙이 없음에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97년부터 장애인 판정 심사권이 대학 장으로 위임되어 이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는 기하지 못한 채 경증 또는 지체장애인만 선발될 위험이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5,665호)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 정원의 100분의 2를,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방송·통신대학입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를,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제8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각각 초과할 수 있으며,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전문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4.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5.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8.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업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학생의 선발)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34조까지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공표) 교육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입학연도의 전학년도 개시일의 전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대학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예고하여 한다.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 되어야 한다.

3) 입학거부와 특수교육진흥법⁵⁵⁾

특수교육진흥법(이하 특수교육법)에서는 제5조 제1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과정까지를 의무교육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입학거부는 위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제13조 제2항에서 편의제공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의 2에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연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제15조 제1항에서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더욱 명백해진다. 그런데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범위는 대부분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학교와 일반 학교에 대학교를 포함시킬 수 있지만 다른 조항을 준용하여 대학교를 제외시킬 가능성도 있다. 물론 유추해석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불확실하지만 명문 조항이 없는 것은 큰 문제다.

(1) 입학거부 사례(기사)

[서울교대] 신검탈락 장애인 합격처리

청주대가 장애인의 편입학 원서접수를 거부했다 철회한데 이어 최근 입학전형 신체검사에서 시력장애인을 탈락시켰던 서울교대도 불합격 처분을 취소키로 했다. 서울교대는 24일 긴급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2000학년도 신입생모집 특별전형에서 한쪽 눈을 설명했다는 이유로 신검에서 불합격한 김훈태(19. 배문고 졸업예정)군을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 교대는 이와 함께 이번 정시모집에서 비슷한 사유로 불합격한 다른 한 명의 지원자에게도 입학을 허용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년 입학전형부터 교육계 등 각계의 여론수렴을 거쳐 새로운 신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교대 김종호 교무처장은 “본교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초등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해왔다”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김군 등의 입학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0. 2. 24.

신체검사서 탈락… 오전 서울지검에 고소

청주대가 장애인 편입학원서를 거부한데 이어 서울교대도 장애인을 신체검사에서 탈락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시각 장애 6급으로 한쪽 눈을 설명한 김훈태(19. 배문고 졸업예정)군과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올해 입시에서 특차에 합격한 김군을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킨 서울교대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16일 오전 서울지검에 접수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12월25일 서울교대 특차지원에서 합격통지서를 받고 27일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서울교대는 모집요강에 따른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양안의 교정시력 0.4 미만인자’에 의거, 김군을 불합격시켰다.

연구소는 “통상적으로 ‘양안의 교정시력’이라고 하면 두눈의 시력을 더한 시력을 의미하는데도 서울교대만 유독 두 눈 각각의 시력으로 해석, 김군을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2000. 2. 13.

[보기 싫은 세상] 1급 시각장애인 대학편입 거부당해

『편견과 불공평한 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10일 오후 「장애인 대입거부사태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열린 서울 방배동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1급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난 9일 청주대 음악교육학과에 편입원서를 내려다 접수를 거부당한 황선경(28·여·대전 오정동)씨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오는 18일 한성신학대학 종교음악학과 졸업을 앞둔 황씨는 음악교육학과에 편입, 같은 시각장애인들의 음악교사가 될 꿈에 부풀어 있었다. 지난 7일 원서접수를 위해 청주대를 갔던 황씨는 뜻하지 않은 학교측의 답변을 들었다.

『시설과 운영상의 문제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학교측의 입장은 원서마감인 9일까지 요지부동이었다. 마감시각을 앞둔 황씨는 서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연구소는 「접수거부는 특수교육진흥법 제 13조 차별금지조항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황씨는 이날 내내 원서를 들고 접수대 앞에 마냥 서 있어야 했다.

황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청주대 총장을 특수교육진흥법 위반으로 청주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열 연구소장은 「청주 A대, 서울의 B대 등 원서접수와 입학사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모으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대 측은 이에 대해 「특수교육진흥법은 중고등학교에 대한 규정이고, 더구나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설치 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황씨는 93년 대전 맹아학교를 졸업한 뒤 96년 장애인으로서는 처음 한성신학대학에 입학, 졸업 평점 4.0(4.5만점)을 기록할 만큼 뛰어난 수학능력을 보였다. 이날 황씨 곁에는 같은 시각장애인로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민숙희(23·연세대 기악3)씨가 내내 자리를 지켰다.

(최재혁기자 : jhchoi@chosun.com) <한국일보> 1999. 12. 7.

55) 연세대 중앙 동아리 게르니카 2000 세미나 자료집 부분 발췌

(2)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장애인?

앞의 사례에서 교대 입학거부 사례의 경우, 입학거부 당사자는 일안 실명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장애6급으로 장애인이다. 따라서 특수교육법을 통해서는 입학거부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의 제8조 제1항의 차별금지 조항,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을 통해서만 자신에게 내려진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90% 이상이 저시력 장애인이고 시력 0.04~0.2 사이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수교육법으로, 또 특별전형을 통한 혜택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하다고 하겠다. 특수교육대상자 판정기준의 완화와 유형(종별)의 확대, 구체적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절실히 다.

(3) 문제점 및 개정의 방향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정 방향 이외에도 특수교육법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너무 특수교육기관에만 치중하고 있다. 시·청각, 정신지체(精神遲滯) 장애인의 경우에 대부분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체(遲滯)장애인들은 일반교육기관에서 수학한다. 그러므로 일반교육기관에 대한 규정이 많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재의 특수교육법에는 일반교육기관에서의 입학거부 금지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힘쓸 것, 예산 편성에서의 고려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학이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배제되어 있다.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요구된다.

둘째, 구체적이지 못하다. 보통 법에서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특수교육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너무 부실하다. 단순한 법률의 상세화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 같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전반의 법의 문제와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민법의 경우 총 1118조인데 반해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는 약 2000조에 가까운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개정도 자주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의 제정에 있어서 졸속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다. 옛 일본의 의용 민법과 독일 민법을 토대로 만든 민법 등도 그러하고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등도 그러하다. 또한 개정 역시 쉽지 않다. 정규국회가 열리면 씨우기와 논박만을 주고받으면서 회기를 채우며 회기 막바지에 와서야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이 현 국회의 모습이다. '법의 안정성' 문제도 개정에 커다란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II. 해외 사례 : 미국 버클리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환경⁵⁶⁾

1. 버클리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체계

방문일시: 2001년 7월 17일

버클리 대학은 지난 69년 이후로 꾸준히 장애학생 지원체계를 발전시켜왔으며 현재 850명의 장애학생들을 위해 다음의 12개 분야에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 상담전문가는 장애학생이 학교의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돕고 있다.

① 학사상담

② 특수 적용되는 학칙: 시험시간 연장/ 강의 녹음 허가/ 분리된 조용하고 적당한 밝기의 방에서 시험을 본다/ 시험 중에 학생은 종종 휴식, 치료, 음식, 운동을 할 수 있다./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서기는 시험동안 학생의 답을 기록한다/ 점자나 크게 인쇄된 글자로 된 시험지 복사본을 제공받는다./ 시험동안 기본적인 사칙연산 계산기를 쓸 수 있다./ 들고 다니는 typewriter, 워드프로세서, 노트북 등을 시험 중에 쓸 수 있다./ 학생은 기술적 문제(철자, 대문자, 글씨체, 마침표 등) 때문에 감점 당하지 않는다./ 교수는 대안적인 시험형태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필기시험보다는 구술시험을, 혹은 객관식보다는 단답형을, 혹은 객관식보다는 에세이를 쓸 수 있다.

③보조 서비스: 전문가들은 보조 서비스들이 학생의 특별한 장애 혹은 중복 장애에 적합한지 판단한다. 일반적인 보조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 보조 서비스, 문자나 수화 등을 구화로 바꿔줌(음역 서비스), 수화통역, 수화를 읽고 말로 해줌, 노트필기, 시험 대필자, 실현 보조, 독서보조, 실시간 자막처리, 연구 보조

④보조 기구: DSP의 컴퓨터 전문가들은 장애학생이 그들의 개인장애관련 필요에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맞춰주고 선택해주는 것을 돋는다. 학생들은 웹에서 E-mail 계정을 얻을 때, 프로그램이나 resource 사용법을 배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학생의 장애의 영향을 상쇄시킬 컴퓨터 관련 기구(점역프린터기, 확대독서기, 스캐너, 음성 소프트웨어 등)는 Moffitt Library에 위치한 장애학생 보조 기술센터에 있다. 출력시스템인 The Arkenstone Open Book System은 인쇄물을 스캔하고, 디스크에 저장하기 위해 ASCII로 변환시키며 학생

56) 이 글은 「한국 장애인자립생활 모델을 꿈꾸자」 2001. 9, 연세대 중앙동아리 게르니카, LG Global Challenger 2001 팀 방 보고서 p17~p29을 요약 했음을 미리 밝힌다.

에게 텍스트를 읽어주고 입력시스템인 The Dragon/Naturally Speaking System은 학생들이 마이크에 말을 해서 텍스트를 입력하게 한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독서장애학생과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녹음시스템"을 통해 카세트 테입으로 된 교과서 제작을 주문하는 것을 돋는다.

⑤입학보조: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그들의 학습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것을 돋고 학생들에게 보충방법을 가르친다.(예를 들어 노트필기 기술, 시간관리법, 기억법, 시험을 위한 공부법 등) 또 전문가들은 학생의 장애가 직업선택, 강의 등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담한다.

⑥대학 밖 장애인단체 연계: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지원 혹은 학생들이 이끄는 지역 혹은 주단위, 연방단위의 단체들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설계에 사회의 장애관련 법과 서비스를 충분히 고려해 적극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돋는다.

⑦장애관련 수업개설: "장애탐색" 수업은 장애인권운동사, 장애인의 역사적인 이미지들, 지역사회 활동들,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기술과 기구들에 대한 학습을 시키며 장애학생들에게 2학점의 기회를 준다. 학생들은 자기 옹호 기술을 연습하고 친구들을 지원하는 것을 개발한다. "성공을 위한 학습차와 학습전략 탐색" 수업은 특별히 학습장애와 주의결핍장애학생을 위해 만 들어졌다. 수업내용은 학습차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둔다.(강점의 극대화, 학습계획, 연구, 작문, 시험준비,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 등)

⑧재정보조: 재정부서는 합당한 장애학생(학교 출석시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로 인해 수강 과목이 적은 경우, 장애관련한 특별 비용 지출시)에게 재정 보조를 한다. 또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DR)는 Residence Program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학생등록금과 책값을 보조한다.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에서는 숙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활동 보조인 고용 시 Alameda 카운티에서 IHSS 기금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Student Financial Aid 역시 또 다른 재정 보조이다.

⑨주거보조: The Disabled Students' Residence Program에서는 장애학생의 입학 후 1년간 자체장애인의 캠퍼스 내 자립생활을 보조한다. 캠퍼스내 기숙사에 비장애인과 공유하는 건물에 장애학생이 접근 가능한 방을 주는 것은 물론, 직원이 24시간 주말에도 상주하며 활동 보조인 고용, 자립생활기술 훈련(스케줄을 짜고 교통을 갈아타는 등)을 돋는다. 직원들은 활동 보조인 고용이 필요치 않도록 시스템을 고안하는 반면, 극복되지 못한 부분은 개인 학생들이 "In-Home Support Services" (IHSS)에 의뢰하여 도우미를 고용한다. Disabled Students' Program's Attendant Referral service에서는 이 도우미를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한다.

⑩수강신청 우선등록

⑪건물 내 접근: 학교 홈페이지에 건물별 단면도와 휠체어 사용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표시해

놓았다. 장애학생의 출입이 빈번한 기숙사 등의 건물은 전동휠체어의 리모콘으로 문을 열 수 있고 강의실 번호는 거의 모두 점자가 부착되어 있다. 여타의 건물들도 버튼을 통해 문이 열리며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는 거의 갖추어져 있다. 혹 장애인에게 접근이 불가능한 건물은 입구에 "not accessible"이라는 표지를 설명히 해 놓았다. 그리고 경제학과 건물 뒤에는 가능성 뿐 아니라 예술적 아름다움을 겸비한 경사로(VIE VERSA)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보도블록을 이쁘게 가꾸듯 경사로도 완전한 생활공간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⑫의료 서비스: 장애학생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서비스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내 의료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학생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를 받는다면 Medi-Cal 보험을 통해 많은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밖에 장애학생 지원 뿐 아니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법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곳,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여러 가지 재정사업을 펼치는 곳도 있었다. 버클리 지원체계를 돌아보며 시스템의 체계성 뿐 아니라 장애학생에게 특혜처럼 보이는 것들, 가령 시험을 집에서 본다거나 수강신청을 우선하게 해주는 정책들에 비장애인들의 반박이 없다는 점이 놀라웠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승설대학교 장애학생이 장애학생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소송을 건 적이 있었다. 그 때 대학교 측은 입학을 허가해 준 것을 감사하게 알고 다녀야지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절라 답한 적이 있었는데 매우 대조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장애학생은 당연히 비장애인과 다른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인식이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 같다.

2. Cal Disabled Students' Union(이하 CDSU) 학생들과의 만남

방문일시: 7월 17일 11:00-13:00

만난사람: Sarah Tom (버클리 대학 3학년, 2000년 장애학생회장)

Andre Berk(버클리 대학 4학년, 사학전공, 1998년 장애학생회 초대회장)

CDSU는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의 장애학생회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장애학생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850여명 중 30여명. 많지 않은 수이지만 1970년 자립생활을 세계 최초로 시도했던 12명의 장애인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 2001년의 자립생활 철학을 지켜가고 있었다. 지난 1969년 Ed Robert에 의해 처음 설립되어 자립생활운동을 실천한 아래 장애학생회는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는다. 멤버들의 졸업과 동시에 사라지기도 하고 경사로 건설 같은 요구 사안이 생길 때만 학생들이 모이고 문제가 해결되면 곧 사라졌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결성된 장애학생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통관심사를, 보다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

* 98년 이래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

장애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함께 장애물을 제거 노력(EX. 학내 셔틀버스에 리프트를 설치하여 휠체어 장애인이 자유롭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일, 생물학 등 전문용어를 수화통역을 잘못해 시험을 잘못 본 청각장애학생의 소송을 지원하는 일 등)

장애인 지원서비스에 정부 예산을 늘이도록 노력

대학원생 및 교직원에게 장애인의 이슈에 관한 교육

'Independent Expression' 잡지편집에 참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3. 장애학생 Andre Berk 의 기숙사 방문기

방문일자: 7월 17일 16:00-17:00

만난 사람: 뇌성마비 1급 장애학생 Andre Berk

Andy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지만 부모님과 천마일 이상 떨어져서 혼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버클리 대학 4학년 사학과 학생이고 1998년 CDSU를 재건한 학생(당시 초대대표)이다. Andy는 장애가 심해 양팔을 휠체어에 묶어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의 휠체어 head rest에 달린 버튼을 통해 머리로 휠체어를 조종한다. 기숙사 출입문, 엘리베이터, 그의 방문까지 휠체어의 버튼으로 여닫는다. 컴퓨터는 마우스나 키보드 없이 휠체어에 부착되어 있는 적외선 송수신기와 컴퓨터에 깔려있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로 입력을 하며 Blue Window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키보드 대신 휠체어의 버튼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밖에 필요한 물리적 사안들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었다. 이 활동 보조인은 Andy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Andy가 지시하는 것만 들어주는 수동적인 역할을 했다. 그것을 통해 장애인이 직접 책임을 지고 자신의 일상을 조정하고 선택하는 자립생활의 구현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은 Andy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County로부터 받으며 다른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의 경우, 가령 Andy의 뉴질랜드에서 온 친구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그러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4.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하 ADA)/ 504 실행 협력인 인터뷰

방문일시: 7월 17일 14:00 ~15:00

만난 사람: Ward Newmeyer 씨

ADA법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장애 때문에 받는 차별을 최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5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제1조는 노동자, 제2조와 제3조는 공공 시설에의 접근성, 제4조는 통신수단, 제5조는 기타의 조항이다.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과 달리 ADA는 대학 뿐 아니라 개인사업체까지도 장애인 반차별법을 적용하여 사회전반에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의 효과를 특특히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이 법에 기초하여 장애학생들은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시 단위마다 존재하는 ADA 법 협력자들이 그 실행을 감시, 협력한다. 구체적인 역할은 1)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ADA 관련 소송이나 출판물들을 공부한 후,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교가 장애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야하는 일을 조언하고 2)장애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을 하며 3)만약 장애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미리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구비해 준다. 또, 4)학교 내에서 필요한 ADA관련 정책들을 조사하고, 해당 부서에 그 정책에 관하여 교육하며 5)ADA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경우 장애 학생의 지원 센터인 Disabled Students' Program에 이러한 추이를 알려 ADA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ADA의 협력자의 존재를 통해 현실적 어려움(재정적 이유, 건물의 노쇠함 등)이 있더라도 장애인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령, 장애학생이 원하는 수업이 편의시설이 없는 곳에 개설되면 편의시설이 갖춰진 건물로 강의실을 옮겨 수업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ADA 제정 후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로서는 이러한 대안적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면 장애유형별로 필요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도 많다. 예를 들어, 어떤 방에 카페트를 깔 경우, 시각 장애인들은 카페트를 깔면 그들의 지팡이가 바닥에 닿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아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카페트가 깔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 청각 장애인들은 카페트가 소리를 흡수하여 그들의 주위 소리에 집중을 하기 쉽기 때문에 카펫을 깔기를 원한다. 이런 경우, ADA의 적용에 있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어떤 것을 우선 순위에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KDA(Korean with Disability Act)를 만들게 된다면 이런 논의들을 많이 참고해야 할 것이다.

5. 장애관련 통계청Disability Statistics Center

일시: 7월 18일 10:00 ~11:00

만난 사람: Steve Kaye, 강태원 씨, Alice Wong

Disabled Statistic Center(이하 DSC)는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산하의 부설연구기관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통계를 내는 곳이다. 현재 진행되는 연구들은 장애인 실업률에 관한 연구, 신체적 기능적 측면을 넘어 정신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장애의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일상 생활 도우미 활용 서비스에 관한 연구 등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용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서부터 정부의 장애복지정책 수립에까지 다양하게 활용된다. 일례로 DSC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여러 연구 성과들 중, 1990년 ADA가 통과된 후에도 여전히 장애인 실업률이 70%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직업에 필요한 기술 미비, 직업활동에 대한 두려움 등을 꼽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법의 통과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인적 자원을 높일 교육이나 직업훈련,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통계청의 재원은 정부인데, 이 점 또한 한국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서는 아직 정확한 장애인 관련 수치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와 대안까지 연구하는 연구소가 정부 지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부러웠다.

6. 버클리 자립생활센터 Berkeley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BCIL)

일시: 7월 18일 10:00 ~ 30

만난사람: Executive Director Jan Garrett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이하 CIL)은 버클리 대학의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DSP(Disabled Students' Program)가 장애학생들의 졸업과 함께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1972년 생겨났다. 버클리 자립생활센터는 오늘날 미국 전역의 자립생활센터의 모범이 되는 곳으로서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자립생활을 위한 욕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곳에서 지원되는 서비스는 크게 다음의 10 여 가지이다.

① 활동 보조 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라 부르는 이것은 CIL에서 활동 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하여 원하는 장애인에게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한다. 위에 소개한 Andy도 중증장애를 갖기 때문에 생활의 많은 부분을 첨단기계로 해결하지만 미진한 부분은 PAS를 통해 해결했다. 활동 보조인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으로 장애인이 시키는 일만 한다. 장애인이 고용주가 되는 소비자주의의 구현인 것이다. 보조인의 월급은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인 경우는 정부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교나 회사가, 소속된 곳이 없는 경우는 개인이 지불한다. 한국의 경우는 PAS를 실시하는 복지관과 개인이 부담하지만, 이것은 과도기의 형태이고 앞으로 회사, 학교 등 단체가 정부지원을 받아 보조인을 고용할 것인지 정부가 직접 장애인에게 보조인의 월급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정부가 90%의 비용을 지불한다.

② 자립생활 기술 훈련 프로그램: 쇼핑, 돈 관리, 보행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들을 교육한다.

③ 직업 혹은 고용 서비스: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나, 직업 기술을 상담해주고, 이력서 작성, 인터뷰 준비 같은 소소한 일도 도와준다. 또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 장애인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④ 재정 지원 상담: 재정적 지원과 건강 보험 등과 관련해 상담을 하고 정책관련자를 교육하는 일을 한다.

⑤ 주택 개조 서비스: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주택 구조를 개조해 주거나 혹은 적합한 주택을 소개해준다. 주택 개조에 드는 비용 역시 일본의 경우는 90%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⑥ 동료상담 서비스: 같은 장애를 가진 상담자가 생활전반에 관한 정부와 심리적 문제에 대해 상담한다. 한국의 정립회관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같은 경험을 한 동료그룹들이 무엇보다 가장 힘이 된다고 한다.

⑦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동료상담과정과 자립생활 기술 훈련을 하며 알맞는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캐인과 점자 종이도 판매한다.

⑧ 청각 장애인 혹은 시청각 중복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수화통역, 동료상담과정, 자립생활기술 훈련

⑨ 장애가 있는 영 유아 서비스: 자립생활 기술과 동료 상담자 과정을 하며, 가정교사가 파견되고 부모와 가족들의 상담 및 교육 과정이 있다.

⑩ 고객지원 프로젝트[Client Assistant Project(CAP)]: 재활부서나 다른 연방 재활프로그램에 자문과 지원을 해주는 일.

⑪ 자기 옹호논리와 시민권에 대한 교육

⑫ 정보제공과 시민단체나 기관 소개 및 연계

이 중 ① ② ④ ⑤ ⑥ ⑫는 캘리포니아 주의 자립생활센터의 필수 사항이다.

프로그램 뿐 아니라, 자립생활 센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구성비에 대해서도 놀라운 점이 많다. 직원의 5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버클리 자립생활센터의 경우는 80~85%가 장애인이었다. 또 이사회 70%가 장애인이어야 하며 이사회 의장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 버클리 지역 CIL은 그 외에도 장애유형별, 인종별, 성별로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최대한 다른 조건들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의 시각으로 보자는 당사자주의가 그대로 반영될 듯하다. 한국의 경우도 자신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장애인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CIL의 재원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사립재단, 개인기부금인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일 것이다. 그밖에 장애인의 보조기구비용은 장애인이 입학한 학교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에서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소속한 곳이 없는 장애인 개인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기는 어렵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월등한 수입을 갖지 않는 한,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들이 학교나 회사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IV. 국내 사례 : 무장애대학교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류명숙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3학년

한창 전공공부를 하느라 정신 없던 2학년 2학기, 우리 학교로 편의연대 배웅호 실장과 전정옥 국장이 편의시설에 관한 특강을 나왔다. 이전까지 내게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하지만 특강을 듣고 난 후에는, 우리아이들이 졸업을 한 후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 때 편의시설에 관한 특강이 교사로서 아이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까지도 돌아볼 수 있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

무장애 대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친구의 권유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지만, 편의연대라는 이름을 듣고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도 거짓은 아닌 것 같다. 우선 우리의 시작은 관심 있는 사람을 모으는 일부터였다. 친한 친구들 몇 명이 모여 시작하기로 한 일이었기 때문에 건물 조사에 필요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과 동기들, 후배들, 친한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설명해가며 해서 모인 사람이 12명이었다. 편의시설과 건물조사 체크리스트(checklist)에 관해 교육을 받고 학교 내에 건물들 중 우선 순위를 정해 중요한 건물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조사 방법도 서툴러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조사방법이 조금 익숙해진 후부터는 건물의 장·단점이 눈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다. 큰 특징은 구관과 신관의 편의시설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이다.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은 편의시설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건물을 이용할 경우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무엇보다도 수많은 계단들로 인해 1층 이외에는 이동할 수 없는 건물이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새로 지어진 건물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들은 대부분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이것도 그저 형식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길에 턱이 존재하고, 혼자서 이용하기에는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고 손잡이마저 없는 경사로, 찾기 힘든 구석진 곳에 위치한 화장실 등을 보면서 실제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가 참 아쉬웠다.

조사할 당시에는 ‘이것도 없어’, ‘여기도 턱이 있어’, ‘이것도 잘못 설치되었어’ 하며 서로 열내기에 바빴지만, 집에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보니 “왜” 그렇게 편의시설이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분명 우리학교의 입학제도는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해마다 장애인들이 입학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학교는 당연히 장애학우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학교 내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은 채로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지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학교의 정책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여주기 위한 정책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우선 장애학우들 스스로의 활발한 참여와 요구가 있어야 하겠다. 이번에 무장애 대학 만들기를 함께 한 친구들은 모두 비장애인들이었다. 함께 조사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모두 비장애인들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 학교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내가 생각하고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장애 대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로 인해 차별 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학우들이 모여 자신의 권리는 주장하는 것이 학교에 대해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장애학우 스스로가 직접 표면으로 나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비장애학우들과 함께 학교의 학생으로써 요구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글을 보시는 어떤 분이 '네가 장애학우들과 함께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느냐?' 하고 묻는다면, 부끄럽지만 나는 대답할 말이 없다. '무장애 대학 만들기'를 마치면서 내가 가장 아쉬운 점도 바로 그것이다. 좀 더 많은 장애 학우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던 점. 그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장애학우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비장애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얼마 전 우리학교 내 '사회봉사센터'에서는 "2001 이화 사회봉사대행진"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며 일정 중에 '장애아동초청 이화투어', '일일장애체험' 등을 계획하였다. 학내에 장애인 관련 문제를 알려내겠다는 취지였다. 해마다 반복되는 단순한 장애체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신입생(혹은 재학생) 교육과 같은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봉사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잘 몰라 참여하지 못한다거나, 장애인에 대한 예절을 몰라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장애에 관한 내용과 예절,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등을 상세하게 교육하여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우들을 위한 학내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편의시설 조사와 함께 현재의 checklist는 중도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제작되어 있어 청각·시각 장애인의 요구를 조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처럼 개개인의 장애는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요구를 지닌다. 같은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요구를 지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담기구를 만들어 장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전문가들은 장애학생의 현황과 장애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학교는 장애학우를 위한 관련 기구로 '사회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담기구가 아니며 장애학생 관련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역부족이다. 좀 더 전문적인 전담기구의 마련을 통해 장애학생의 이동권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비장애 학생과 동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 같은 곳을 다니는 한 친구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었다.

"... 우리 과에 들어와서, 어쩌면 평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회해야 하는 것인지... 차라리 모른다면 아파하지 않을 것을 말야... 정말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 않는 내 자신에게 묻는다... 특교과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냐고... . . ."

이 친구의 말이 무장애 대학 만들기를 하면서 내내 내가 느꼈던 고민을 모두 말해주는 것 같다. 정말로 가끔은 '차라리 몰랐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여러 가지 보고, 듣고, 알아버린 것을 어찌겠는가?

무장애 대학이 끝나고 이젠 어디를 가던지 편의시설을 살피게 된다. "여기는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있군." "이게 뭐야 이건 잘못 된 거잖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다니라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다. 장애에 관해 몰랐었지만 이제 장애아동의 교육을 생각한다. 아이들의 교육만을 생각했었지만 이제 졸업 후의 장래를 생각한다.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며 어떻게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 내 안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기에 "무장애 대학 만들기"에 참여했던 것이 만족스러우며 보람이 있다. 내가 변화하고 함께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도 변화하고, 또 다시 주위 사람들을 작게나마 변화시킬 때 그것은 현실에서 실천될 것이며 무장애 대학도 우리의 꿈만이 아닌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V. 참고문헌

- 「천국에는 계단이 없다」 1997,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2000. 8 김헬레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필요의 이론」 1990, 인간사랑 학술총서 58 아그네스 헬러, 강정인 옮김
-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 영향 분석」 2000.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석사 학위논문
-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권건보 (1999).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백원욱 사망사건진상조사자료집」 1992, 백원욱사망사건 진상규명 범장애인단체 대책위원회준비위원회.
- 「장애대학생의 갈등과 정체성 형성」 2000, 정영석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논문
- 「한국의 장애인」, 1993,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1.5,
- 「한국장애인인권백서」 199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대학의 입시제도 분석」 2000. 8, 김지영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지원시스템 개발에 관한 일 연구」 1997. 6, 김은영 이화여대 대학원 특수교육 및 장애인 복지정책 Term Paper.
- 「서울지역 장애인 대학생 실태 및 의식조사 보고서」 1994, 장애인 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운영회 활동 자료집 中 p91-141.
- 「한국 장애인자립생활 모델을 꿈꾸자」 2001. 9, 연세대 중앙동아리 게르니카, LG Global Challenger 2001 탐방 보고서 p17~p29.
- 「대학교육에 있어서 장애인 교육 환경 및 개선 방향」 1996, 대구대 특수교육과 학술부 기획논문, 특수교육과 학술지 제 11 호 p64~108.
- 「청각 장애인 대학생활 환경과 대안」 1998. 1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 아카데미 조별 과제 자료집 p12~24.
- 「장애인 특별전형에 대한 법 검토와 대안」 1998. 1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 아카데미 조별 과제 자료집 p100~p104.
- 「이화여대·연세대·서울대 3개 대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7. 1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 대학 12·13기 조별 과제 모음집 p49~p55.

- 「특수교육연차보고서」 1996, 1997, 1998, 1999 교육부
- 「무장애대학교 만들기 간담회 -그 첫 번째 이야기-」 2001. 10,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 「국립재활전문대학 설립·운영방안(별책부록)」, 한국직업체육재활학회, 1997 강위영 외.
- 「장애인특례입학실시 대상 대학교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1996. 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시설 접근법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김정열 1996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대학종합평가 2000년 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교육부, 2000 미공개 자료
- 「다름에 대하여」 2001, (연속기획 2 장애 여성의 등장- 그 정치적 의미) 당대비평 여름호
- 「지구화 시대의 전세계 노동자 中 4. 다양한 정체성과 다양한 전략들 : 국가, 자본, 가부장제에 맞서기(알리타 치지·르네피틴)」 2000. 4 로날드 뭉크·피터 워터만 편.
-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3 보건사회 연구원
- Nirje, B. (1969). The normalization principle and its human management implications. *Changing patterns in residential services for the mentally retarded*. Edited by Kugel, R. B. & Wolfensberger, W. Washington, D. C : President's Committee on Mental Retardation.
- O'Hara, S. (1993). *Disabled Student Service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 Thirty year's experience and growth*.

VI. 설문지 1 : 장애인차별도 인식조사 설문지

무장애 대학교(Barrier Free University) 만들기를 위한 기초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장애인들이 대학에서 정당하게 교육받고 생활하기 위한 '무장애 대학만들기'의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장애인 교육 환경 현황 파악의 기초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책 당국, 해당 대학과 당사자인 장애인 학생과 교직원과 비장애인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해야하는지를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교육환경 미비로 인해 많은 비판과 활동이 있어 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일부 학교 안에만 머무를 뿐 교육 당국의 전체적인 정책 입안이나 대안 모색, 지원은 그 연구나 집행은 미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대학교의 장애인 교육환경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장애인 고등 교육에 대한 정부와 대학 당국의 정책입안과 그 책임을 부여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무장애 대학 만들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번 설문은 실질적인 활동과 변화를 위해 적극 활용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장애 학생들의 솔직하고 꼼꼼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응답결과는 무기명으로 단순 통계처리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는 무관하며,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장애유형과 상태등을 따져서 조밀하게 설문해야 마땅하겠으나 설문 분량을 줄이기 위해 설문 내용을 합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설문 이후에 진행되는 무장애 대학교(Barrier Free University) 만들기의 여러 활동에도 장애인 대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점자설문지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시각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txt 파일과 hwp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e-mail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6월

통계를 위한 일반 기초 조사입니다.

| | | | | |
|--|--|--|--|--|
| | | | | |
|--|--|--|--|--|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 여 ()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살)

3. 귀하는 어느 대학교에 다니고 계십니까?
()대학교 ()계열 ()학부 ()학과

4. 귀하는 어떤 장애 상태에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

 - 1) 양쪽 목발을 사용한다. ()
 - 2) 한쪽 목발을 사용한다. ()
 - 3) 휠체어를 사용한다. ()
 - 4) 혼자 운전하는 전동차를 이용한다. ()
 - 5)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다. ()
 - 6) 목발없이 보조기(의족이나 의수)를 착용한다. ()
 - 7) 목발이나 보조기 없이 보행은 가능하나 비장애인들처럼 빨리 뛰거나 걷기는 어렵다. ()
 - 8)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신변처리가 어렵다. ()

-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 1) 캐인을 사용하는 전맹이다. ()
 - 2) 안내견을 이용하는 전맹이다. ()
 - 3) 형체나 밝기를 구별할 수 있는 시력이 잔존한다. ()
 - 4) 약시나 고도의 근시로 특수렌즈나 도수높은 안경을 끼어야 한다. ()
 - 5) 한쪽 눈만 전맹이거나 고도의 약시이고 다른 한쪽 눈은 시력이 잔존한다. ()
 - 6) 학업시 점자나 녹음기를 주로 이용한다. ()
 - 7) 글씨를 확대하거나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면 학업이 가능하다. ()

-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 1) 전음성 난청으로 보청기를 사용하면 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 ()
 - 2) 감음성 난청으로 보청기를 사용해도 소리를 인지하기 어렵다. ()
 - 3)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이다. ()

- 4) 청력 손실이 41dB 이상(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다소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난청)이다. ()
- 5) 보청기를 착용해도 보통 말소리의 이해가 어려운 56dB 이상의 난청이다. ()
- 6) 한쪽 귀의 청력은 정상이거나 보통의 말소리를 이해할 수 있다. ()
- 7) 구화로 의사소통이 70% 이상 가능하다. ()
- 8) 수화를 주로 사용한다. ()
- 9) 수화와 구화를 같이 사용한다. ()

언어·장애 학생의 경우

- 1)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며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ACC)를 사용한다. ()
- 2) 자신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다시 똑똑하게 말해주기를 요청할 때가 많다. ()
- 3) 자신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 4) 조금 어눌한 편이지만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

5. 귀하는 언제부터 장애 상태에 있었습니까?

- 1) 태어날 때 () 2) 태어나서 취학 전까지 사이 () 3) 초등학교 때 ()
 4) 중학교 때 () 5) 고등학교 때 () 6) 대학교 때 ()
 7) 기타 ()

6. 당신의 장애 상태는 계속 악화되거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 1) 그렇다 () 2) 아니다 ()

7. 귀하의 장애 유형과 등급은 무엇입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8. 귀하의 대학진학 이전의 교육환경 조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표 해주십시오.)

- ① 귀하가 진학했던 학교에 모두 표해주십시오
 일반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② 검정고시(초등과정)·(중등과정)·(고등과정)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다.
- ③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들어왔다.
- ④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졸업하고)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왔다.

9. 귀하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0. 귀하가 주로 어떻게 통학을 하십니까? ()
 ① 자가용 ② 지하철 ③ 버스 ④ 택시 ⑤ 전동휠체어 ⑥ 수동휠체어 ⑦ 전동스쿠터
 ⑧ 시각 장애인 안내견 ⑩ 길을 암기 해서

11.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학내이동 수단은 무엇입니까? ()

- ① 자가용 ② 전동휠체어 ③ 수동휠체어 ④ 전동스쿠터 ⑤ 업혀서 ⑥ 도보로

입학과정에 대한 설문 조사입니다.

1. 당신은 대학진학 과정에서의 정보 습득(입시 지침서, 진학상담등)나 지원(보충수업, 진학반 운영)등에 대해 비장애인 학생들에 비해 학교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차별받은 적이 있습니까? ()

- 1) 받은 적이 있다
 2) 받은 적이 없다.

2. 차별 받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1)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를 대학교가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2)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와 지원을 고등학교가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3) 장애 유형이나 상태의 특성을 고려한 대학진학 위해 충분한 진학 상담을 받지 못했다.
 4) 장애 유형이나 상태의 특성을 고려한 대학진학 위해 충분한 보충 수업이나 진학 지도를 받지 못했다.
 5) 대학 진학 공부를 위한 충분한 학습 자료나 기자재가 부족했다.

-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을 위해 입시 정보나 진학지도에 관한 개선점이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3. 당신은 입학과정(원서접수, 면담)등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1) 입학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차별 받은 적이 없다.
 2) 입학원서 접수 자체를 거부당해 본적이 있다.
 3) 입학원서 접수 전 사전 면담을 통해 입학을 거부당해 본적 있다(다른 학교로 진학 권유)
 4) 입학원서 접수 전 사전 면담을 통해 장애를 이유로 지원 학과나 학부 또는 지원 계열을 바꿀 것을 권유당한 적이 있다.
 5) 입학과정 또는 면접할 때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ex. '그래 가지고 학교는 잘 다니겠냐?' 등)

4. 입학과정에서 차별 받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끼신 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장애가 너무 심하거나 특정 장애유형(청각·시각·휠체어·뇌성마비)을 이유로 편의시설이 없다거나 교육환경 지원 등을 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차별 받았다.
- ② 지원학과(계열·학부)가 장애를 이유로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차별 받았다.
- ③ 지원학과(계열·학부)가 장애를 이유로 졸업 후 취업이 어렵다고 차별 받았다.
(ex. 의대, 음대, 교대, 음대, 사범대 등)
- ④ 입학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여러 가지 각서나 계약서 등을 쓴적이 있다.
(ex. 편의시설을 요구하지 않겠다, 학교 생활 중 부상하거나 사망하여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등)
- 그 외의 입학과정에서 차별의 경험과 이유가 있다면 보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1.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는데 있어 장애인을 위한 교육환경, 학교의 지원이나 편의 시설이 없어 차별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장애인을 위한 교육환경이나 지원 등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부족하긴 하나 차별이라고 느낀 적은 없다.
- ② 장애인을 위한 교육환경이나 지원 등을 학교가 하고 있긴 하나 전문성이 없고 보여주기 행정에 머물고 있어 차별적이다.
- ③ 학교에서의 지원은 없으나 학우들의 도움이나 조교, 교수 등의 지원으로 공부하고 있어 다소 차별적이다.
- ④ 학교가 별다른 지원을 해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잘 도와주지 않아 개인적인 노력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 명백히 차별이다. (개인적인 학습 기자재 구입 포함)

- 그 외의 학교 재학 과정에서 차별 경험과 이유가 있다면 보다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2. 다음은 학교내 장애인 교육환경이 미비하거나 아예 없어 발생한 차별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입니다. 다소 문항수가 많더라도 중요한 설문이니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물리적인 편의시설 등이 없어 아예 접근을 못하거나 시간이 걸려 수업이나 시험을 못 받은 적이 있다.
- ② 교수나 조교가 장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수강자체를 거부하거나 수업참여에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③ 공부하는데 있어 장애 유형을 고려한 학습기자재(점자 프린트, 지체장애인용 책상)나 교육환경(전공·교양 서적의 디지털지원, 도우미제도 등)을 지원해주지 않아 원래 실력보다 낮은 학점을 받은 적이 있다.

④ 공부하거나 시험을 보는데 담당 조교나 교수들이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아 원래 실력보다 낮은 학점을 받은 적이 있다.

⑤ 강의실을 찾지 못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수업이나 시험을 못 받은 적이 있다.

⑥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해 음식 섭취를 조절하거나 집 또는 병원에서 일을 본 적이 있다.

⑦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해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

⑧ 장애인을 위한 행정지원이 없어 수강신청 등의 학사 관리에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⑨ 학교 식당에 물리적인 편의시설이 없어 짚거나 학우들과 함께 식사를 못해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⑩ 학교 식당이 셀프 서비스라 짚거나 학우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⑪ 학내 복지시설(보건소·학생지원센터), 학생자치시설(동아리방·학생회실)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지원이 없어 참여에 차별 받은 적이 있다.

- 그 외의 구체 차별 경험과 이유가 있다면 보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3. 다음은 이미 마련된 장애인 교육환경과 편의시설에 대한 설문 조사입니다.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학교가 마련한 물리적 편의시설은 기준에 맞지 않거나 주먹구구식의 보여주기식 설치에 머물러 이용하지 않는다.

② 할 수 없이 이용하긴 하지만 오히려 다치거나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

③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학습기자재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도움이 되지 않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④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학습기자재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⑤ 수화 통역사나 접역 도우미와 같은 인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자원봉사로 되어있어 책임성이나 전문성이 약하다.

⑥ 장애인 주차장은 마련되어 있으나 기준에 맞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⑦ 장애인 주차장은 마련되어 있으나 비장애인들이 무단 이용해 어려움이 많다.

⑧ 시각장애인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수강거부나 수업참여에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⑨ 청각 장애인을 위한 팩스 지원이나 정보 접근 시스템은 거의 없어 차별받은 적이 있다.

⑩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등 학내 이동 수단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

⑪ 접자 블록이나 과속방지턱 등이 없어 위험을 느낄 때가 많다.

⑫ 학교가 장애인과 그 교육환경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

4. 이러한 차별로 인한 현상을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장애인 교육환경 미비로 자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② 장애인 교육환경 미비로 휴학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③ 실제로 자퇴를 하고 보다 나은 학교로 입학했다.
- ④ 실제로 휴학을 하기도 했다.
- ⑤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이나 차별을 예상하고 학교와 학과·학부·계열을 선택했다.
- ⑥ 장애인 교육환경 미비로 학업외(동아리·학생회)에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⑦ 장애인 교육환경 미비로 장애가 더 악화되기도 하였다.

5.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는데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장애인 담당 전담 부서나 전문인력 배치
- ② 학습기자재 지원과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휴게실과 같은 공간 마련
- ③ 장애인 학생지원 강제를 위한 학칙제정이나 시청각 장애인 정보접근과 지체 장애인 학사 관리를 위한 행정 지원
- ④ 무료 도우미(자원봉사)나 장애 학생담당 조교와 같은 인적 지원
- ⑤ 장애학생 장학금이나 유료 도우미 활용을 위한 재정지원
- ⑥ 교수와 교직원, 비장애 학생들의 교육과 인식 개선

교육 환경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학교나 다른 사람에게서 겪은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점수 하나에만 표시 해주십시오)

평가 기준 변환 지표

- A+ 어떠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은 적이 없다.
- A 현실적으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은 적이 있지만 문제될 것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
- B 차별이나 소외를 받은 적이 있지만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 C 차별이나 소외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선되고 있다.
- D 차별이나 소외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 F 차별이나 소외가 심각하며 관련법이나 학칙 등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1. 장애 학우 대한 비장애인 학우들의 인식이나 태도는 어떻습니까?

- 1) A+ 2) A 3) B 4) D 5) F

2. 장애 학우에 대한 교수, 강사, 조교들의 인식이나 태도는 어떻습니까?

- 1) A+ 2) A 3) B 4) C 5) D 5) F

3. 장애 학우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이나 태도는 어떻습니까?

- 1) A+ 2) A 3) B 3) C 4) D 5) F

4. 장애 학우에 대한 학교 당국의 실질적인 투자와 태도는 어떻습니까?

- 1) A+ 2) A 3) B 3) C 4) D 5) F

5. 학교에 경사로나 점자, 정보 기기 등 편의시설이 있다면 이는 어떠합니까?

- 1) 학우들의 요구나 설치기준에 맞아 아무 어려움이 없다.
- 2) 설치 기준에는 맞으나 학우들의 요구들을 수렴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
- 3) 설치 기준에는 맞으나 찾기가 어렵거나 구석진 곳에 있어 이용하기 어렵다.
- 4) 설치 기준에도 맞지 않고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
- 5) 설치 기준에도 맞지 않고 위험해 아예 이용하지 않는다.

6. 학교에 장애인 전담 기구나 담당 교수 조교제도 도우미, 수화 통역사제도가 있다면 이는 어떻습니까?

- 1) 장애학우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어 많이 이용한다.
- 2) 도움이 필요할 때 가끔씩 이용한다.
- 3) 잘 마련되어 있지만 별 필요성을 못 느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 4) 오히려 그런 제도가 차별이라고 생각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 5) 장애 학우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해 이용하지 않는다.

● 끝으로 장애인 교육 환경과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의견이나 저희에게 하고픈 말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VII. 설문지 2 : 각 대학별 교육환경 실태조사지

무장애 학교(Barrier Free University) 만들기 교육 환경 조사 목록

이 조사 목록은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를 위한 설문 조사와 더불어 장애인 고등교육운동을 해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만 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만든 것입니다.

이 설문은 장애인들이 대학에서 정당하게 교육받고 생활하기 위한 '무장애 대학만들기'의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장애인 교육 환경 현황 파악의 기초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정책 당국, 해당 대학과 당사자인 장애인 학생과 교직원과 비장애인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해야하는지를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교육환경 미비로 인해 많은 비판과 활동이 있어 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일부 학교 안에만 머무를 뿐 교육 당국의 전체적인 정책 입안이나 대안 모색, 지원은 미비하였습니다. .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대학교의 장애인 교육환경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장애인 고등 교육에 대한 정부와 대학 당국의 정책입안과 그 책임을 부여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무장애 대학 만들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번 설문은 실질적인 활동과 변화를 위해 적극 활용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장애 학생들의 솔직하고 품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응답결과는 무기명으로 단순 통계처리됨으로써 개개인의 사생활과는 무관하며,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장애유형과 상태등을 따져서 조밀하게 설문해야 마땅하겠으나 설문 분량을 줄이기 위해 설문 내용을 deb형과 상태별로 통합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설문 이후에 진행되는 무장애 대학교(Barrier Free University)만들기의 여러 활동에도 장애인 대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첨자설문지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시각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txt 파일과 hwp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e-mail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6월

■ 대학 교육 환경 파악을 위한 일반 기초 조사

1. 재학중인 장애 학생 현황(장애 유형과 상태에는 중도 장애 포함)

| 대학 이름 | 대학 있는 곳(주소) | 총 재학생 수(학부생기준) | 명 | 추정 장애인 학생 수 | 명 |
|-------|-------------|----------------|---|-------------|---|
| | | 추정 일반 학생 수 | 명 | | 명 |

학년도별 유형별·상태별 장애 학생 수

| 입학 년도 | 특 별 전 형 정 원 | 입학자수 | | 시각 장애 | | 청각장애 | | 지체장애 | | | 근육병 | 정서 |
|-------------|----------------------------|------|------|--------|--------|--------|--------|------|----|----|-----|----|
| | | 특별전형 | 일반전형 | 전 맹 | 약 시 | 전 청 | 약 청 | 휠체어 | 목발 | 기타 | | |
| 95학년 도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96학년 도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97학년 도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98학년 도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99학년 도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2000학년 도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2001학년 도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종 합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2. 대학 교육 환경 인적 현황

| 분류 | | 항 목 | 예 | 아니오 | 정확한 명칭 부서명 |
|----------------|-------|--|------------|------------------|---------------|
| 장애 학생 전담 기구 | hc-m | 학교 차원의 회의체(위원회, 의사전달기구 등)이 있다. | | | |
| | hc-e | 장애 학생처와 마찬가지로 장애 학생 전담기구가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 | | |
| | hc-u | 학생처와 종합봉사센타와 같이 일반 행정기구가 장애 학생들을 전담한다. | | | |
| 장애 학생 전담 인력 | hm-em | 장애 학생만을 전담하는 교직원이 따로 있다. | 명 | | |
| | hm-um | 일반 학생 전담 교직원이 장애 학생도 함께 전담한다. | | | |
| | hm-ep | 장애 학생을 전담하는 교수가 있다. | 명 | | |
| | hm-ea | 장애 학생을 전담하는 조교가 있다. | 명 | | |
| 장애 학생 지원 인력 | hh-eh |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차원의 도우미 제도가 있다. | 자원 활동 (무료) | 장학금 '지원금 (유료) | |
| | hh-er | 장애 학생 도우미에 대한 학점 제도가 있습니까 | 학점 | | |
| | hh-uo | 학내에 장애인 차지(학생회), 자조(관련 동아리, 학회) 등이 있다. | | | |
| 장애 학생 이해 통합 도구 | hu-l | 교양 강의 중 장애 관련 교과목이 있다. | 학점 | | |
| | hu-g | 학내 장애 학생 지원이나 이해를 위한 매뉴얼이나 지침서 등이 있다. | | | |
| | hu-s | 체육 교과목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교과목이 있다. | 학점 | | |
| 재활 지원 도구 | hh-h |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차원의 의료 서비스가 있다. | | | |
| 제정 지원 | hf-se | 장애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따로 있다. | 기간 원 | | |
| | hf-b |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예산, 기금이 있다. | 기간 원 | | |

3. 물리적 교육 환경 현황(공간 유무)

| 총 건물 수 | | 동 | | 학생과 교수들이 강의, 학생활동, 세미나, 시험을 보는 총 건물 수 | 동 | |
|----------|---|------------------------|---|---------------------------------------|--------------------|--|
| 수업 강의 공간 | 총 건물 강의동 | 동 | | 식당 공간 | 총 식당수 | |
| | 휠체어 장애인 접근 가능 수 | 건물접근 내부접근 | | | 휠체어 장애인 접근 가능 수 | |
| | 시각장애인 접근 가능 수 | 건물접근(점자有) 내부접근(점자有) | | | 시각장애인 접근 가능 수 | |
| | 약시인을 위한 확대 표시 수 | | | | 약시인을 위한 확대 표시 수 | |
| | 청각 장애인 위한 지도, 표지 수 | | | | 청각 장애인 위한 지도, 표지 수 | |
| | 일반 화장실 | 동 | | | 교수 휴게실 | |
| | 장애인 화장실 | 동 | | | 여학생 휴게실 | |
| 화장실 | 장애인 화장실 | 동 | | | 장애인 휴게실 | |
| | 약시인을 위한 확대 표시 수 | 동 | | | | |
| | 청각 장애인 위한 지도, 표지 수 | 동 | | | | |
| | 중앙 도서관 | 장애인 지정석 | 석 | | | |
| 학습 공간 | 총 독서실 수 (도서 소장 않함) | 동 | | 장애인 주차 통행 요금 | 전액무료 | |
| | 장애인 학생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별도의 건물로 있을 경우 ※ 표시) | 동 | | | | |
| 전산 공간 | 총 건물 전산(컴퓨터)실 수 | 동 | | | 50% 할인 | |
| | 휠체어 장애인 접근 가능 수 | 내부접근 | | | | |
| | 시각장애인 접근 가능 수 | 내부접근 (점자有) | | | | |
| | 음성지원, 전용사용 이용 가능한 수(컴퓨터 수) | 이용접근 동 기 | | | 일반 학생과 동일 | |
| | 약시인을 위한 확대 표시 수 | | | | | |
| | 청각 장애인 위한 지도, 표지 수 | | | | | |
| | | | | | 교수 교직원과 동일 | |
| 주차 공간 | 총주차 공간 수 | 동 | | | | |
| | 장애인주차공간 수 | 동 | | | | |

■ 장애 상태에 따른 교육 환경 조사 목록

청각 장애인

| 분류 | | 항 목 | 예 | 아니 오 | 명칭 부서명 |
|----------------|----------------------------------|-------------|--|---------|-----------|
| 수업정보 접근 | dm-ib dm-i dm- | 수화통역사 | 전문 수화통역사가 학교(수업)에 고용되어 있다. | (시간)명 | |
| | | | 전문 수화통역사가 학교(수업)에 자원 활동을 한다. | (시간)명 | |
| | | | 전문 수화통역사를 자비를 들여 고용한다. | | |
| | dm-ir dm-is dm-ij dm-io | 비수화통역사 | 일반 학생들이 학점을 받고 수화통역을 한다. | 명(수강인원) | |
| | | | | 학점 | |
| | | 수화통역사 | 일반 학생들이 장학금(지원금)을 받고 수화통역을 한다 | | |
| | | 수화통역사 | 일반 학생들이 자원 활동으로 수화통역을 한다 | 명 | |
| | | 수화통역사 | 개인이 아니라 수화 동아리나 단체에서 수화 통역을 한다. | 명 | |
| | dr-f | 수업 배치 | 수강 신청을 할 때 우선 수강 신청할 수 있다. | | |
| | d- |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재수강권이 보장되어 있다. | | |
| | dc-f | | 수업을 들을 때 자리 배치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 학점 | |
| 행정·학사 관리 정보 접근 | dc-f d-gu D-lu | 수업 과목 | 수강하는 수업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다. | 학점 | |
| | | | 청각 장애학생 위한 시각(멀티)자료실 따로(지정석)이 있다. | 석 | |
| | | | 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교재(개발)들이 마련되어 있다. | | |
| | | | 사이버(인터넷)강의를 몇 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 학점 | |
| | |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업 안내 책자등이 있다. | | |
| | | | 교과목 중에 청각 장애인을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따로 있다. | 학점 | |
| | dm-i | d-w d-fn | 교직원 중 수화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 | 명 | |
| | | | 인터넷 수강신청제도가 있다. | | |
| | | | 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팩스가 마련되어 있다. | 대 | |
| | | | 청각 장애학생이 할 수 있는 근로 장학 제도(아르바이트) 있다. | | |
| | | | 청각 장애학생들을 위한 컴퓨터(실) 또는 사용에 있어 우선권이 있다. | | |
| | | |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학칙이나 내규가 있다. (시험시간과 방식, 기숙사, 장학금 규정 등) | | |

시각 장애인

| 분류 | | 항 목 | 예 | 아니오 | 명칭 부서명 |
|----------------|--|----------------|---|-----|-----------|
| 수업정보 접근 | B-1 Bmi-b Bmi- Bmi-j Bmi-w | 점자변환 | 수업을 위한 브레일 라이트를 학교가 개인에게 제공한다. | 대 | |
| | | | 수업을 위한 브레일 라이트를 개인이 갖고 있다. | 대 | |
| | | | 점자 프린터를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다 | 대 | |
| | | | 점자 프린터를 외부(복지관)에서 하고 있다. | | |
| | | | 수업 교재(시험)을 위한 점역자를 학교가 고용하고 있다. | 명 | |
| | Bn-b Bh B Bn-h Bn-h | 음성변환 | 수업 교재(시험)을 위한 점역자를 개인이 고용하고 있다. | 명 | |
| | | | 수업 교재(시험)을 위한 점역자를 근로 장학생으로 한다. | 명 | |
| | | | 수업을 위한 노트북을 학교가 개인에게 제공한다.(음성카드) | 대 | |
| | | | 수업 강의록 녹음체계가 있다. | | |
| | | | 시각 장애 학생 위한 청각 교재가 마련되어 있다. | | |
| | Bc-f Bh-ul | 수업과목 | 시각 장애 학생을 위해 디지털(text) 교재를 제공한다. | | |
| | | | 음성지원을 위한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있다. | 대 | |
| | | | 스크린 확대 기제(CCTV)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대 | |
| | | | 시각 장애학생 위한 청각(멀티)자료실이 따로(지정석)있습니까? | 동 | |
| | | | 시각 장애학생을 위한 교재(개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 |
| 행정·학사 관리 정보 접근 | Bh-g Be-w Bn-f | 행정·학사 관리 정보 접근 | 사이버(인터넷)강의 중 text 지원 과목이 있습니까? | | |
| | | | 시각 장애 학생지원(점자 점역,안내견) 등 관련된 교과목이 있습니까? | 학점 | |
| | | | 교과목 중에 시각 장애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따로 있습니까? | 학점 | |
| | | | 장애로 인하여 필수 과목 이수가 불가능 경우 대체 과목이 있습니까? (음대, 사범대, 공대) | | |

휠체어·목발·근육·절단 장애인

| 분류 | | 항 목 | 예 | 아니오 | 명칭 부서명 |
|---------------|------|--|----|-----|-----------|
| 수업정보 접근 | Ph-b | 학내 이동을 위해 이동수단(차량, 전동차, 휠체어) 등을 학교가 제공한다. | 대 | | |
| | | 학내 이동을 위한 도우미를 학교가 고용한다. | 대 | | |
| | | 학내이동을 위한 도우미를 학생으로 학교가 장학금 등으로 지원한다. | 대 | | |
| | Pm-b | 학내이동을 도우미를 학우들의 자원활동에 의존한다. | | | |
| | | 장애 학생의 이동이 불가능 할 경우 강의실 변경등이 가능하다. | | | |
| | | 수업을 위한 노트북을 학교가 개인에게 제공한다. | 대 | | |
| | Pn-a | 강의 시간내 수강을 지원하는 조교(도우미)제도가 있다. | 명 | | |
| | | 뇌성마비, 절단 장애인등을 위한 특수 컴퓨터 기재들이 있다. | | | |
| | | 뇌성마비, 근육 장애인을 위한 학적이나 내규가 있다. (시험시간연장, 방식, 기숙사, 장학금 규정 등) | | | |
| | Pn-h | 장애학생 위한 휴게실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따로(지정석)있다. | | | |
| | | 사이버(인터넷)강의에 대해 장애 학생 우선권이 있다. | | | |
| | | 휠체어 장애 학생지원(자원활동)등 관련된 교과목이 있다. | 학점 | | |
| 행정·학사관리 정보 접근 | Ph | 학사·행정에 대한 1:1일 서비스가 있다. | 명 | | |
| | | 휠체어 장애학생이 할 수 있는 근로 장학 제도(아르바이트)있다. | | | |
| | | 휠체어 장애학생들을 위한 컴퓨터(실) 또는 사용에 있어 우선권이 있다. | | | |

■ 건물별 장애인 교육 환경 조사

강의동·행정기관

건물이름 : ()

| 분류 | | 항목 | 예 | 아니오 | 기타 수치 |
|------|------|---|---|-----|-------|
| 설치여부 | 1-1 | 차량으로 건물접근이 입구, 경사로까지 가능하다. | | | |
| | |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 | | |
| | | 건물 주위 동선으로부터 입구까지 점자 볼록이 있다. | | | |
| | | 건물 주 출입구에 경사로가 따로 있다. | | | |
| | | 건물 주 출입구에 경사로는 없지만 대체할 우회로가 있다. | | | |
| | 1-2 | 건물 주위 동선으로부터 입구까지 점형정보,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건물 주위 동선으로부터 입구까지 점자 안내 표지판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 | | |
| | | 보도 또는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장비 볼록 연석,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경사진 보도 또는 접근로가 30m 이상일 경우 30m마다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했다. | | | |
| | | 이동 동선 중 연석을 드나들 수 있는 유효폭 90cm이상의 통로가 있다. | | | |
| | | 경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밸毯비 주변에는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 | | |
| | | 연석의 높이가 6cm-15cm 사이이다. | | | |
| 설치기준 | 12-1 | 보도 또는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다. | | | |
| | | 보도 또는 접근로에 보행장애물이 있습니까? | | | |
| |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까지 가지치기를 하였습니까? | | | |
| | 1-8 | 경사진 보도 또는 접근로가 30m 이상일 경우 30m마다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했다. | | | |
| | | 보도 또는 접근로의 기울기가 18분의 1이하이다 | | | |
| | |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이 1.2m 이상입니까? | | | |
| | | | | | |

| 분류 | | 항 목 | 예 | 아니오 | 기타 수치 |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다. | 전체 개 | | |
| | |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했다. | 장애인 개 | |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가 되어 있다. | | | |
| | |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안내요원이나 단속 요원이 있다. | | |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 | | |
| | 설치 기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로 가는 통로의 유효폭은 1.2m이상이다. | | |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로 가는 것에 장애물이 없다. | | |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폭이 3.3m이상이다. | | |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길이는 5m이상이다. | | | |
| | |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폭이 2m이상이다. |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3-1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3cm이하이다. | | | |
| | 3-2 |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가 3cm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였다. | | | |
| 주출입구 점자 블록 | | 주출입구 입구 안파에 점자 블록이 깔려있다. | | | |

| 시설 | | 항 목 | 예 | 아니오 | 기타 수치 |
|------------|------|--|---|-----|-------|
| 경사로 | 4-1 | 경사로의 유효폭은 0.9m-1.2m 사이이다. | | | |
| | 4-2 | 경사로의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75m이상일 경우, 0.75m마다 수평면으로 된 참이 있다. | | | |
| | 4-3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굽절부분 및 참에는 $1.5m \times 1.5m$ 이상의 활동공간이 있다. | | | |
| | 4-4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이다. | | | |
| | 4-5 |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일 경우 또는 경사로의 높이가 0.15m이상일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 | | |
| | 4-6 | 양측면의 손잡이는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다. | | | |
| | 4-7 |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30cm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였다. | | | |
| | 4-8 | 손잡이의 높이는 경사로 닥면으로부터 0.8-0.9이내이다. | | | |
| | 4-9 | 손잡이의 지름은 3.2cm-3.8cm사이이다. | | | |
| | 4-10 | 손잡이와 벽과의 간격은 5cm내외이다. | | | |
| | 4-11 | 손잡이의 양쪽부분 및 굽절부분에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 | | |
| | 4-12 |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며 평탄하다. | | | |
| 휠체어 리프트 | | 건물 외부로 나와 있는 경사로의 경우 지붕 덮개가 있다. | | | |
| | | 건물 외부 경사로의 경우 안전벽이나 안전휀이 있다. | | | |
| | 5-1 | 휠체어 리프트는 눈에 잘 띠고 잘 찾을 수 있는 곳에 있다. | | | |
| | 5-2 | 계단 위 또는 아래에 각각 1개의 $1.4m \times 1.4m$ 이상의 승강장이 있다. | | | |
| | 5-3 | 승강장에는 시설관리자를 호출할 수 있는 벨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5-4 | 휠체어리프트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 | | | |
| | 5-5 | 휠체어리프트의 열쇠는 항상 사용 가능하다. | | | |
| | 5-6 | 휠체어리프트는 고정형입니까? 수직형입니까? | | | |
| | 5-7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내부 바닥의 유효면적이 폭 $0.9m$ 이상 깊이 $1.2m$ 이상이다. | | | |